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19. 12



AUSTRALIA

호주 편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호주 편 -

2019. 12

연구총괄 정재현 부연구위원

연구자 박지우 선임연구원
김미정 연구원

목차

제1편 개관	11
I. 일반 개황	11
II. 경제 개황	14
1. 주요 경제 지표	14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15
가. 호주의 對세계 수출입	15
나. 호주의 국가별 수출입	16
3. 외국인 투자 동향	18
가. 호주의 FDI 유출입	18
나. 업종별 투자유입 현황	19
다. 국가별 투자유입 현황	21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22
1. 한-호주 수출입 동향	22
2.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25
가. 협상 추진의 배경	25
나. 협상의 내용	27
IV.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34

제2편 통관제도	36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법령	36
1. 통관행정 조직	36
2. 관계법령	42
II. 관세 신고와 납부 및 관세평가	45
1. 관세 신고와 납부	45
가.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45
나. 과세표준 및 관세율	45
2.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46
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46
나. 특별소비세(LCT, WET)	47
다. 통관처리수수료(Import Processing Charges)	49
3. 관세평가	50
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50
나. 동일상품 및 유사상품(Identical goods value and similar goods value)	51
다. 연역(Deductive value) 및 산정(Computed value)	52
라. 합리적 기준(Fall-back value)	52
III.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53
1. 품목분류	53
2. 관세율 제도	55
가. 관세율 수준	55
나. 관세율표의 구성	58
다. 관세율의 종류	60
IV. 감면 및 환급	65
1. 관세의 감면제도	65

가. 관세감면제도	65
나. 관세양허규칙(TCO)	66
다. 특정 투입물(CIM)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67
2. 관세의 환급제도	69
가. 관세환급제도	69
나. 관세유예제도(Tradex)	71
V. 원산지제도	76
1. 비특혜원산지제도	76
2. 특혜원산지제도	78
가. 일반특혜관세	79
나. FTA에 의한 특혜관세	81
3.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82
가. 개요	82
나. 신청절차	83
VI. 보세제도	85
1. 개요	85
2. 보세창고	86
VII. 수출입규제	90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90
가. 수출입 금지 물품 목록	90
나. 담배 제품의 규제	95
2. 무역구제제도	97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98
나. 세이프가드	101
3. 기타 비관세 장벽	103
가. 비관세 장벽 적용 현황	103

나. TBT 및 SPS	104
다. 인증	110
라. 환경 관련 규제	114
VIII. 행정구제제도	117
1. 개요	117
2. 행정불복제도	118
IX. 벌칙	123
1. 개요	123
2. 관세형벌의 종류	124
가. 수출입 관련 규정 위반	124
나. 관세유예제도 관련 규정 위반	127
X. AEO제도	129
1. 개요	129
2. ATT 공인 대상 및 기준	131
가. 공인대상	131
나. 공인기준	131
3. ATT 공인 절차	134
4. ATT 혜택	136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141
I. 수입통관절차	141
1. 개요	141
2. 통관절차	142
가. 수입신고	142

나. 물품 검사	146
다. 관세 납부	146
라. 물품 반출	148
3. 담배(Tobacco) 수입	148
II. 수출통관절차	150
1. 개요	150
2. 수출통관절차	151
가. 수출신고	151
나. 물품반출	155
다. 기타	156
참고문헌	158
부록 I. 관세율법 Schedule 4에 따른 관세감면 품목	161
부록 II. 수출신고서 양식((B957 Form)	172

표 목차

제1편

〈표 1-II-1〉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15
〈표 1-II-2〉 최근 5년간 호주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16
〈표 1-II-3〉 2017년 호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16
〈표 1-II-4〉 2018년 호주 10대 수출 품목	17
〈표 1-II-5〉 2018년 호주 10대 수입 품목	18
〈표 1-II-6〉 호주의 FDI 유출입 추이	19
〈표 1-II-7〉 호주의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	20
〈표 1-II-8〉 對호주 10대 투자유입국 현황	21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입 현황	23
〈표 1-III-2〉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수출품목	23
〈표 1-III-3〉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수입품목	24
〈표 1-III-4〉 한-호주 FTA 일지	25
〈표 1-III-5〉 한-호주 FTA 협정문 구조	28
〈표 1-III-6〉 한-호주 FTA 양국 상품양허	29
〈표 1-III-7〉 한-호주 FTA 양국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31
〈표 1-IV-1〉 호주 FTA 발효(FTA in force) 현황	34
〈표 1-IV-2〉 호주 FTA 체결(FTA concluded but not yet in force) 현황	35

제2편

<표 2-I-1> 호주 「관세법(Customs Act of 1901)」의 구성 42
<표 2-I-2> 호주 「통상법(Commerce Act of 1905)」의 구성 43

<표 2-II-1> 고급차량세 부과 현황 48
<표 2-II-2> 호주세관 수입통관처리비 시행 현황(2019년 현행) 50

<표 2-III-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55
<표 2-III-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56
<표 2-III-3> 품목별 관세율 수준 57
<표 2-III-4> 특혜관세 적용 국가 61
<표 2-III-5> HTS상 협정세율 규정 64

<표 2-VI-1>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허용되는 물품 89

<표 2-VII-1> 호주의 수출입 금지 물품 목록 91
<표 2-VII-2> 호주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 100
<표 2-VII-3> 반덤핑위원회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사례 101
<표 2-VII-4> 호주의 對 한국 비관세장벽 규제 현황 104
<표 2-VII-5> 호주의 對 한국 TBT 현황 105
<표 2-VII-6> 호주 對 한국 외부전원장치 에너지효율 규제 사례 107
<표 2-VII-7> 호주의 에어컨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E3 프로그램) 115

제3편

<표 3-I-1>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 인상 현황(2014.9.~2019.9) 149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환율(AUD/USD) 추이(2018. 1.~2019. 9)	13
---	----

제2편

[그림 2-I-1] 호주 이민국경보호부(DIBP) 조직도(2017년)	38
--	----

[그림 2-I-2] 호주 국경수비대(ABF) 조직도(2019년)	41
---	----

[그림 2-III-1] 관세율 조회 화면	59
------------------------------	----

[그림 2-III-2] 감면세율(General Concession) 예시	63
--	----

[그림 2-VII-1] 호주 검역청에 소개된 우리나라 수입식품에 대한 주의 내용	109
--	-----

[그림 2-VII-2] 호주의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RCM) 마크	113
--	-----

제3편

[그림 3-I-1] 고객등록양식(Client Registration Form)(B319)	143
---	-----

[그림 3-I-2] Nature 10 수입신고 서식	144
------------------------------------	-----

제1편 개관

I. 일반 개황¹⁾

- 정식 국가 명칭은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로 수도는 캔버라(Canberra)임
 - 호주 최초의 도시는 시드니 지역으로 1788년 1월 영국이 죄수 및 유배지 건설 관련 인력을 이주시키며 국가가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6개의 주(State)가 있음

- 호주의 국토면적은 7,692,024km²로 북부와 서부는 열대기후이며, 남부는 온대 기후를 보임
 - 호주의 국토면적은 남한의 약 80배에 달하며, 오세아니아(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에 위치함

- 인구는 2019년 8월 기준 약 2,540만명으로 세계 54위이나 오세아니아 국가 중 최다임
 - 인구는 주로 동부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종은 영국계 36.1%, 호주계 33.5%, 중국계 5.6%, 인도계 4.6% 등임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 검색일자: 2018. 4. 18.

12 제1편 개관

- 공용어는 영어이나, 현지에서 수백개의 원주민어가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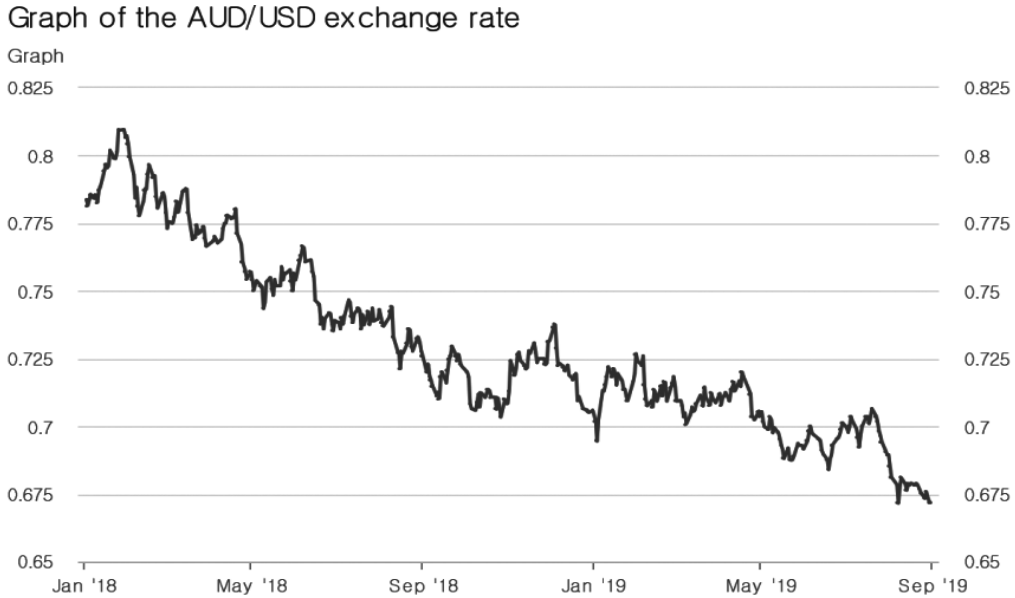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로,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임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외국 국가원수와 대사 접견, 내각선서, 의회개원 등의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함
 - 의회는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각종 법률안에 대한 권고와 동의의 권한을 보유함

- 1901년 연방정부가 수립되어 1986년 호주 헌법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됨
 - 1840년대 죄수노동이 점차 자유이민 노동으로 대체되면서 호주대륙은 시드니, 멜버른 등 식민지역으로 분리되고 각 식민지별로 독자적 행정조직, 조세체계를 보유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 종교는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기타 기독교(16.3%), 이슬람교(2.6%), 불교(2.4%) 등임

- 호주의 화폐단위는 호주달러(AUD, \$)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임
 - 호주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1호주달러는 0.77달러이며, 2019년 9월 19일 1호주달러는 0.6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1] 환율(AUD/USD) 추이(2018. 1.~2019. 9)



Sources: WM/Reuters

자료: 호주중앙은행(RBA), <https://www.rba.gov.au/statistics/frequency/exchange-rates.html>,
 검색일자: 2019. 8. 27.

- 한편 원 호주달러 환율(AUD/KRW)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 동안 최저 785.25원, 최고 861.91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²⁾
- 1980년대 골드러쉬와 경제호황으로 이민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건설, 교통 및 각종 산업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됨
 - 골드러쉬는 1851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금이 발견되어 시작되었으며, 골드러쉬에 의한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 유입되어 임금경쟁을 초래하면서 백인 노동자는 유색 인종에 대한 배척운동이 시작됨

2) 환율정보사이트, <https://kr.investing.com/currencies/aud-usd>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 지표

- IMF는 2018년 호주의 1인당 GDP를 세계 11위로 집계하였으며, 이는 호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 경제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아짐
 - 2014년 2.5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 0.9포인트 상승한 2.68%를 기록함
 -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함
 - 2014년 47,178달러, 2015년 48,166달러, 2016년 49,145달러, 2017년 50,390달러, 2018년 52,362달러임
 - 2018년 기준 금리는 1.5%로 2016년부터 역대 최저금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호주중앙은행(RBA)이 설립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임

- 한편 호주중앙은행의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2.7%임³⁾
 - 호주중앙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 둔화, 소비 및 주택 투자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성장률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3) 호주중앙은행,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19/may/economic-outlook.html>

〈표 1-11-1〉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59	2.46	2.78	2.43	2.68
명목GDP(십억USD)	1,454.98	1,232.91	1,264.52	1,379.55	1,427.77
1인당 GDP(PPP, USD)	47,178.79	48,166.02	49,145.45	50,390.88	52,362.97
정부부채(% of GDP)	34.15	37.84	40.63	40.81	40.51
물가상승률(%)	2.51	1.49	1.28	1.97	2.16
실업률(%)	6.07	6.04	5.71	5.59	5.29
외환 보유고(백만\$)	50,944.25	43,180.25	50,982.29	63,678.05	51,155.66
이자율(%)	2.5	2	1.5	1.5	1.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9. 4.

2. 對세계 수출입 동향⁴⁾

가. 호주의 對세계 수출입

- 최근 5년간 호주의 무역규모는 2014~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회복세로 돌아섬
 - 2018년 호주의 총교역액은 약 4,925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8.5%가량 증가함
 - 2018년 호주의 對세계 수출은 약 2,571억호주달러, 수입은 2,353억호주달러임
 - 2018년 기준 무역수지는 약 21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약 8.5% 감소함

4) 최신자료 반영을 위해 수출입액 단위는 호주달러로 통일함. 2019년 9월 10일 기준 1호주달러는 0.68달러임. <https://www.rba.gov.au/statistics/frequency/exchange-rates.html>

〈표 1-11-2〉 최근 5년간 호주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AUD))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239,937.25	187,731.89	192,465.84	231,055.5	257,182.71
수입	237,351.76	208,790.65	196,191.96	228,772.13	235,373.74
무역수지	2,585.49	-21,058.76	-3,726.12	2,283.37	21,808.97

자료: Trade Statistics At A Glance, 호주 외교통상부, <https://dfat.gov.au/TRADE/RESOURCES/TRADE-AT-A-GLANCE/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19. 9. 2.

나. 호주의 국가별 수출입

- 2018년 기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교역규모는 2,146억호주달러임
- 중국에 이어 일본, 미국, 우리나라,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순임

〈표 1-11-3〉 2017년 호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AUD))

순위	국가	교역	수출	수입	수지
1	중국	214,608	136,287	78,321	57,966
2	일본	85,762	58,796	26,967	31,829
3	미국	73,877	23,098	50,779	-27,681
4	우리나라	40,948	26,646	14,302	12,344
5	싱가포르	32,242	14,968	17,275	-2,307
6	인도	30,409	22,316	8,093	14,223
7	뉴질랜드	29,262	15,039	14,224	815
8	영국	26,947	10,521	16,426	-5,905
9	태국	25,727	7,827	17,900	-10,073
10	말레이시아	24,180	10,127	14,054	-3,927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https://dfat.gov.au/trade/resources/trade-at-a-glance/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19. 9. 2.

- 2018년 기준 호주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으로 수출규모는 약 668억호주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5.3%를 차지함
- 석탄과 함께 철광석이 632억호주달러로 전체 수출규모의 약 14.4%를 차지함
 - 그 외 주요 수출 품목군은 천연자원 및 여행서비스임
 - 천연가스, 유학서비스, 여행서비스, 금, 알루미늄정광석, 소고기, 원유, 구리정광석 등이 있음

〈표 1-11-4〉 2018년 호주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호주달러(AUD), %)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석탄(Coal)	66,860	15.3
2	철광석 및 철정광(Iron ores & concentrates)	63,277	14.4
3	천연가스(Natural gas)	43,298	9.9
4	교육 관련 여행서비스 (Education-related travel services)	35,234	8.0
5	교육을 제외한 개인관광서비스 (Personal travel (excl education) services)	22,240	5.1
6	금(Gold)	19,137	4.4
7	알루미늄광석 및 알루미늄정광 (Aluminium ores & conc)	11,341	2.6
8	소고기(Beef, f.c.f.)	8,661	2.0
9	원유(Crude petroleum)	8,097	1.8
10	구리 및 구리정광(Copper ores & concentrates)	5,996	1.4

자료: <https://dfat.gov.au/trade/resources/trade-at-a-glance/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19. 9. 2.

- 2018년 기준 호주의 최대 수입 품목은 여행서비스로 수입규모는 약 448억호주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0.8%를 차지함
- 개인관광서비스 외에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정제유, 자동차, 통신장비 등 가공 또는 공업제품임

〈표 1-11-5〉 2018년 호주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호주달러(AUD), %)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교육을 제외한 개인관광서비스 (Personal travel (excl education) services)	44,804	10.8
2	정제유(Refined petroleum)	25,266	6.1
3	자동차(Passenger motor vehicles)	22,411	5.4
4	통신장비(Telecom equipment & parts)	14,400	3.5
5	원유(Crude petroleum)	13,790	3.3
6	화물운송수단(Goods vehicles)	10,684	2.6
7	수송수단(Freight transport services)	10,108	2.4
8	컴퓨터(Computers)	9,686	2.3
9	여객수송서비스(Passenger transport services)	7,339	1.8
10	가축용을 포함한 의약품 (Medicaments (incl veterinary))	7,203	1.7

자료: <https://dfat.gov.au/trade/resources/trade-at-a-glance/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19. 9. 2.

3. 외국인 투자 동향

가. 호주의 FDI 유출입

- OECD에 따르면 2018년 호주로 유입된 FDI는 약 607억달러로 2014~2018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함
 - 2015년을 제외하고 2014~2017년간 400억달러대 FDI 유입액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600억달러대로 증가함
- FDI 유입 잔액의 경우 2017년 약 6,622억달러로 2014~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함

- OECD의 2018년 유입잔액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당해 FDI 유입액이 늘어나 유입잔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8년 호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약 18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30억 달러 감소함
- FDI 유출 잔액의 경우 2017년 약 4,60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2016년 및 2017년의 FDI 유출 잔액은 각 약 4,012억달러, 약 4,606억달러임

〈표 1-Ⅱ-6〉 호주의 FDI 유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USD))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DI 유입 총액	40,968	20,466	47,753	46,363	60,747
FDI 유입 잔액	562,986	537,757	576,768	662,271	-
FDI 유출 총액	463	-20,059	2,321	4,881	1,849
FDI 유출 잔액	446,443	388,973	401,288	460,624	-

주: 2019년 3월 최종 업데이트 반영
 자료: OECD,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australia-2019-3_g2g9e420-en, 검색일자: 2019. 9. 19.

나. 업종별 투자유입 현황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광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의 37.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조업(2위), 금융·보험업(3위), 부동산업(4위)에 투자하는 비중은 비슷함
- 업종 중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숙박·음식업의 투자유입 증가율이 두드러짐
 - 금융·보험업은 2016년 약 661억호주달러에서 2018년 약 1,075억호주달러로 약 45.6% 증가함

- 부동산업은 2016년 약 756억호주달러에서 2018년 약 1,029억호주달러로 약 13.2% 증가함
- 숙박·음식업은 2016년 약 70억호주달러에서 2018년 약 87억호주달러로 약 28.6% 증가함

〈표 1-11-7〉 호주의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십억호주달러(AUD), %)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비중
1	광산 및 채석 (Mining & quarrying)	336.2	343.6	365.5	37.8
2	제조 (Manufacturing)	94.7	101.8	107.7	11.1
3	금융·보험 (Financial & Insurance activities)	66.1	73.8	107.5	11.1
4	부동산 (Real estate activities)	75.6	90.8	102.9	10.6
5	도·소매 (Wholesale & Retail trade)	53.8	54.7	56.7	5.9
6	정보·통신 (Information & Communication)	25.1	25.5	26.9	2.8
7	건설 (Construction)	20.2	24.4	22.4	2.3
8	전기, 가스, 상수 (Electricity, Gas & Water)	15.8	20.4	21.7	2.2
9	운송·보관 (Transportation & Storage)	24.8	20	19.5	2
10	숙박·음식 (Accommodation & Food service activities)	7	6.8	8.7	0.9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통계자료실, <https://dfat.gov.au/trade/resources/investment-statistics/Pages/australian-industries-and-foreign-investment.aspx>, 검색일자: 2019. 9. 19.

다. 국가별 투자유입 현황

- 2018년 기준 호주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미국으로 약 9,395억호주달러를 투자했으며, 투자액은 2017년 대비 약 26.7% 증가함
 - 미국은 제2위 투자국인 영국과 큰 금액차이(약 3,650억호주달러)가 남
 -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제16위 투자국으로 당해 약 274억호주달러를 투자함

- 최근 2년간(2017~2018) 10대 투자국의 투자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은 국가임
 -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FDI 유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호주는 14위임⁵⁾

〈표 1-11-8〉 對호주 10대 투자유입국 현황

(단위: 십억호주달러(AUD), %)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증감률 (2018/2017)
1	미국	859.5	906.2	939.5	26.7
2	영국	526.2	486.5	574.8	16.4
3	벨기에	271.6	308.1	316.9	9.0
4	일본	223	225.1	229.3	6.5
5	홍콩	102.8	108.7	118.8	3.4
6	싱가포르	91.6	85.4	85.4	2.4
7	네덜란드	76.6	82.1	81.5	2.3
8	룩셈부르크	74.5	80.9	78.4	2.2
9	중국	85	64	63.6	1.8
10	프랑스	28.2	25.3	50.2	1.4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통계자료실, <https://dfat.gov.au/trade/resources/investment-statistics/Pages/statistics-on-who-invests-in-australia.aspx>, 검색일자: 2019. 9. 19.

5) 호주 외교통상부 통계자료실, <https://dfat.gov.au/trade/resources/investment-statistics/Pages/statistics-on-who-invests-in-australia.aspx>, 검색일자: 2019. 9. 19.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 한-호주 수출입 동향

- 2018년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22위 교역국으로 총교역규모는 5,037억달러 (USD)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액은 약 2,652억달러이고 수입액은 약 2,385억달러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무역수지는 266억달러로 전년 17억달러 대비 약 1,229%로 대폭 증가함

- 우리나라의 對호주 무역수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무역수지 증가 요인은 우리나라 LNG 해양플랜트 및 인도 선박의 수출임⁶⁾

6) 코트라 호주공관 뉴스,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검색일자: 2019. 9. 19.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USD),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406	-5.1	1.886	-21.6	1.912	1.4	2.292	19.9	2.652	15.7
수입	2.505	-2.2	2.209	-11.8	2.011	-9.0	2.275	13.1	2.385	4.9
교역 규모	4.911	-3.6	4.095	-16.6	3.923	-4.2	4.567	16.4	5.037	10.2
무역 수지	-98	-300.0	-323	-229.5	-98	69.6	17	117.0	266	1,229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9. 9. 19.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경유, 제트유 및 등유, 휘발유,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축전지, 수산화나트륨, 알루미늄조가공품, 기타 석유제품임

○ 제1위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며, 제트유 및 등유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약 40% 증가해 10대 수출품목 중 가장 큰 수출증가율을 보임

〈표 1-III-2〉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USD), %)

순위	품목명	2017		2018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승용차	2,228,883	19.2	2,118,562	-4.9
2	경유	1,982,268	72.3	1,804,027	-9
3	제트유 및 등유	1,102,987	115.7	1,554,517	40.9
4	휘발유	968,761	-4.2	733,398	-24.3
5	합성수지	145,712	25.8	168,098	15.4
6	건설중장비	126,413	25.4	163,280	29.2
7	축전지	139,752	38.6	137,799	-1.4
8	수산화나트륨	124,432	52.4	129,382	4
9	알루미늄조가공품	111,070	46.3	115,855	4.3
10	기타석유제품	87,996	92.2	105,202	19.6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9. 9. 19.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수입 품목은 유연탄, 천연가스, 철광, 가축 육류, 원유,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아연광, 기타금속광물, 동광, 당류임
-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자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중 2018년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원유, 아연광, 기타금속광물의 수입증가율이 높았음

〈표 1-III-3〉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USD), %)

순위	품목명	2017		2018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유연탄	5,360,808	44.7	5,421,919	1.1
2	천연가스	2,911,703	63.5	4,249,941	46.0
3	철광	3,584,850	26.4	3,405,497	-5.0
4	가축육류	1,165,049	0.3	1,247,014	7.0
5	원유	637,678	22.7	810,519	27.1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737,989	-8.7	729,041	-1.2
7	아연광	422,077	52.7	623,884	47.8
8	기타금속광물	416,706	19.2	563,562	35.2
9	동광	603,638	4.4	475,182	-21.3
10	당류	794,076	17.9	432,083	-45.6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l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9. 9. 19.

2. 한-호주 자유무역협정⁷⁾

가. 협상 추진의 배경

- 호주는 우리나라와 11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됨
- 한-호주 FTA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6년 12월에 이뤄졌으며 이후 연구, 협상을 거쳐 8년만에 체결됨

〈표 1-III-4〉 한-호주 FTA 일지

날짜	회의
2019.2.15.	제3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최
2018.11.8	제1차 원산지 규정 및 무역원활화위원회
2018.8.20	상품무역위원회
2017.10.24	제2차 금융서비스 위원회
2017.8.4.	제2차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2016.11.17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최
2016.10.27	제1차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위원회
2016.5.19.	제1차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2016.4.21	제1차 금융서비스 위원회
2016.3.24.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
2016.2.2.	제2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2015.11.16	제1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최
2015.6.1.	제1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2014.12.12.	한-호주 FTA 발효
2014.12.2.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7) 한 · 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u/1/3_description.pdf

〈표 1-III-4〉의 계속

날짜	회의
2014.4.8.	한-호주 FTA 공식서명
2014.2.10.	한-호주 FTA 가서명
2013.12.4.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2013.12.3.	제7차협상 개최
2013.11.15.	제6차협상 개최
2010.5.24.~28	제5차협상 개최
2010.3.15.~18	제4차협상 개최
2009.11.30.~12.4	제3차협상 개최
2009.8.31.~9.4	제2차협상 개최
2009.5.19.~22	제1차협상 개최
2009.4.23.~24	한-호주 FTA 사전준비회의 개최
2009.3.5.	대통령과 호주 총리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2009.1.16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2008.12.16.	제2차 한·호주 FTA 예비협의를(화상회의)
2008.10.13.~15	제1차 한·호주 FTA 예비협의를(서울)
2008.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8.11.	호주 케빈 러드 총리 방한 중 FTA 예비협의를 개최 합의
2008.4.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2008.4.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07.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7.8.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5.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6.12.9.	호주를 국민방문한 우리측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2007년 초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7년 말까지 완료 목표

자료: 한-호주 FTA 포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1/2/>, 검색일자: 2019. 8. 13.

나. 협상의 내용

- 양측은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함
 -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4.3%, 호주는 100% 품목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94.6%, 호주 100% 수입액에 대해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협정함

1) 협정문

- 한-호주 FTA 협정문은 서문, 본문(총 23장),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음⁸⁾
 - 협정문 본문은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경쟁·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 협력·노동 및 환경, 투명성 및 분쟁해결 부분으로 구성됨
 - 상품무역은 상품의 수출입, 관세철폐, 무역구제 관련 내용임
 - 투자 및 서비스는 투자 관련 의무 및 예외사항,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함
 - 통신 및 전자상거래는 통신과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임
 - 경쟁·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은 관련 정책 개요와 절차, 집행에 대한 내용임
 - 협력·노동 및 환경은 농업, 수산업, 임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에 관한 협력활동과 노동과 환경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협약 내용임
 - 투명성과 분쟁해결은 분쟁해결 관련 적용범위,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임

8) 한-호주 FTA 포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2/>, 검색일자: 2019. 8. 13.

〈표 1-Ⅲ-5〉 한-호주 FTA 협정문 구조

	장	내용
서문		협정의 기본 정신 및 선언적 내용
본문	제1장	최초 규정
	제2장	상품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
	제17장	제도, 일반 및 최종 규정
	제18장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9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제20장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 규정
부속서	부속서1	-
	부속서2	-
	부속서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2/>, 검색일자: 2019. 9. 19.

2) 상품양허

- 양측은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을 협정문에 규정함)
 - 품목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94.3%, 호주의 100%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호주의 관세양허 계획의 종류는 즉시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8년 철폐 등 4개이며 한국의 관세양허 계획의 종류는 즉시철폐, 3년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0년 초과 철폐, 10년간 50% 감축, 계절관세, 양허제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양허하고 있음
 - 이는 한국이 농산품과 같은 민감 품목의 보호를 위하여 관세양허 종류를 다양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은 다수의 농산품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와 같은 예외적인 취급을 확보하게 되었음

〈표 1-III-6〉 한-호주 FTA 양국 상품양허

(단위: 백만달러(USD), %)

	우리나라				호주			
	품목 수	비중	대 호주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대 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625	90.9	8,456	86.3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945	47.6	4,836	49.3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80	43.3	3,620	36.9
3년/3A년	1,019	8.6	367	2.4	115	1.9	950	9.7
5년	564	4.7	2,684	17.5	414	6.7	391	4.0
7년	265	2.2	15	0.1	-	-	-	-
8A년	-	-	-	-	32	0.5	2	0.0

9) 외교통상부, 『한-호주 FTA상세설명자료』, 2014. 4, p. 12.

〈표 1-III-6〉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USD), %)

	우리나라				호주			
	품목 수	비중	대 호주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대 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625	90.9	8,456	86.3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945	47.6	4,836	49.3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80	43.3	3,620	36.9
3년/3A년	1,019	8.6	367	2.4	115	1.9	950	9.7
5년	564	4.7	2,684	17.5	414	6.7	391	4.0
7년	265	2.2	15	0.1	-	-	-	-
8A년	-	-	-	-	32	0.5	2	0.0
10년	413	3.5	335	2.2				
(10년내)	11,201	94.3	14,498	94.6	6,186	100.0	9,799	100.0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TRQ)	171	1.4	25	0.2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186	100	9,799	100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 FTA상세설명자료』,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u/1/3_description.pdf, 검색일자: 2019. 9. 19.

-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가솔린 중소형 승용차, TV, 냉장고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협정함¹⁰⁾
- 주요 수출 공산품에 대한 호주측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 호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도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 동일하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10) 외교통상부, 『한-호주 FTA상세설명자료』 2014. 4, p. 13.

- 한편 우리나라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농산물 셰이프 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두도록 함
- 양허 제외 등 양허방식을 다양화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정함
 - 우리는 쌀,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분유, 천연꿀, 감귤, 인삼, 전복, 뱀장어 등 주요 농수산물 162개 품목(품목수 기준 1.4%)에 대해 양허 제외함

〈표 1-III-7〉 한-호주 FTA 양국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윤활유, LNG,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죽, 단판, 동괴,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야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연어(냉장, 냉동, 훈제) 등	8,940	즉시철폐	5,450	가솔린중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디젤소형, 타이어, 칼라TV, 냉장고, 합성고무, 에어컨,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류, 섬유사, 카스테레오
밸브, 기타목재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 마요네즈,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닭새우류(냉동), 남방참다랑어(냉동) 등	1,019	3년/3A 철폐	115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디젤대형기타, 가솔린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로드휠, 완충기), 밸브, 중고차
원유, 망간철, 단판, 배추완두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조제), 오렌지쥬스(기타), 포도쥬스(기타), 유장(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564	5년 철폐	411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판지,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튜브, 안전유리, 기타타이어, 새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제재목,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완두살구(신선), 대두유, 혼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옥수수, 기타 등	265	7년 철폐	-	-

〈표 1-Ⅲ-7〉의 계속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	8A 철폐	32	양탄자, 의류 (남성바지, 신사복 등)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코르크,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면양(신냉,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등	413	10년 철폐	-	-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옥돔(냉동), 볼락(냉동), 멸치(건조), 게살(냉동), 대게(산것, 산냉), 굴(건조), 홍합(냉동), 소라(냉동) 등	64	12년 철폐	-	-
냉동크림 등	2	13년 철폐	-	-
조제분유, 체더치즈	2	13년철폐(TRQ)		
쇠고기, 파티클보드, 일부 섬유판,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족/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톨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탈각), 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혼합분유), 넙치(냉동), 고등어(냉동), 참다랑어(피레트(냉동)), 꽃게(냉동), 오징어(냉동) 등	332	15년 철폐	-	-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기타), 사료용근채류(기타), 맥주맥, 맥아(볶지않은 것)	6	15년(TRQ)	-	-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3	17년 철폐	-	-

〈표 1-III-7〉의 계속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닭고기(냉동, 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정제설탕(기타) 등	71	18년 철폐	-	-
치즈(모짜렐라, 크림, 가공 등)	4	18년(TRQ)	-	-
밀크와 크림	2	20년 철폐	-	-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5	20년(TRQ)	-	-
혼합양념	1	양허안 분리	-	-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감자고구마), 대두, 사료용근채류, 대두, 이눌린 등	12	10년간 50% 감축	-	-
오렌지, 포도, 감자, 키위, 맨더린	5	계절관세	-	-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2	TRQ	-	-
쌀 및 쌀 관련 품목, 파티클보드, 합판,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 천연꿀, 양파(신냉), 녹용, 쪽파(신냉), 고추, 미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길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전복(산것, 신선, 냉장), 명태(냉동), 굴(냉동), 뱀장어기타(앵귤라종(활어)) 등	169	양허제외	-	-
	11,881	총합계	6,008	-

자료: 관세청, 「한-호주 FTA양허자료」, 2014, 표 1-1

IV.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호주는 고립되어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임
 - 호주의 통상 정책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시장접근기회를 높이고 호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들이 더 나은 물품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임¹¹⁾

-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호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는 11개임
 - 9개의 양자 FTA와 2개의 다자 국가연합 FTA가 발효중임

〈표 1-IV-1〉 호주 FTA 발효(FTA in force) 현황

발효국	일자
뉴질랜드(ANZCERTA)	1983. 1. 1.
싱가포르(SAFTA)	2003. 7. 28.
미국(AUSFTA)	2005. 1. 1.
태국(TAFTA)	2005. 1. 1.
칠레(ACI-FTA)	2009. 3. 6.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NZFTA)	2010. 1. 1.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버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2010. 3. 12. (태국)

11) 호주 농림부, <http://www.agriculture.gov.au/market-access-trade/fta>, 검색일자: 2019. 8. 16.

〈표 1-Ⅳ-1〉의 계속

발효국	일자
	2011. 1. 1. (라오스) 2012. 1. 1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MAFTA)	2013. 1. 1.
한국(KAFTA)	2014. 12. 12.
일본(JAEPa)	2015. 1. 15.
중국(ChAFTA)	2015. 12. 20.
환태평양(CPTPP)	2018. 12. 30.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https://dfat.gov.au/trade/agreements/pages/trade-agreements.aspx>,
검색일자: 2019. 8. 16.

□ 한편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4건임

- 홍콩, 인도네시아, 페루,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¹²⁾와의 FTA가 체결됨

〈표 1-Ⅳ-2〉 호주 FTA 체결(FTA concluded but not yet in force) 현황

국가	일자
홍콩	2018. 11. 15.
인도네시아	2019. 3. 4.
페루	2018. 2. 12.
PACER	2017. 6. 14.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https://dfat.gov.au/trade/agreements/pages/trade-agreements.aspx>,
검색일자: 2019. 8. 16.

□ 한편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협상은 7개임

- 해당 국가는 EU, GCC, 인도, 환경재협약,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¹³⁾,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임

12) 뉴질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에 속하는 14개 남태평양 도서국가

13)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FTA임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법령

1. 통관행정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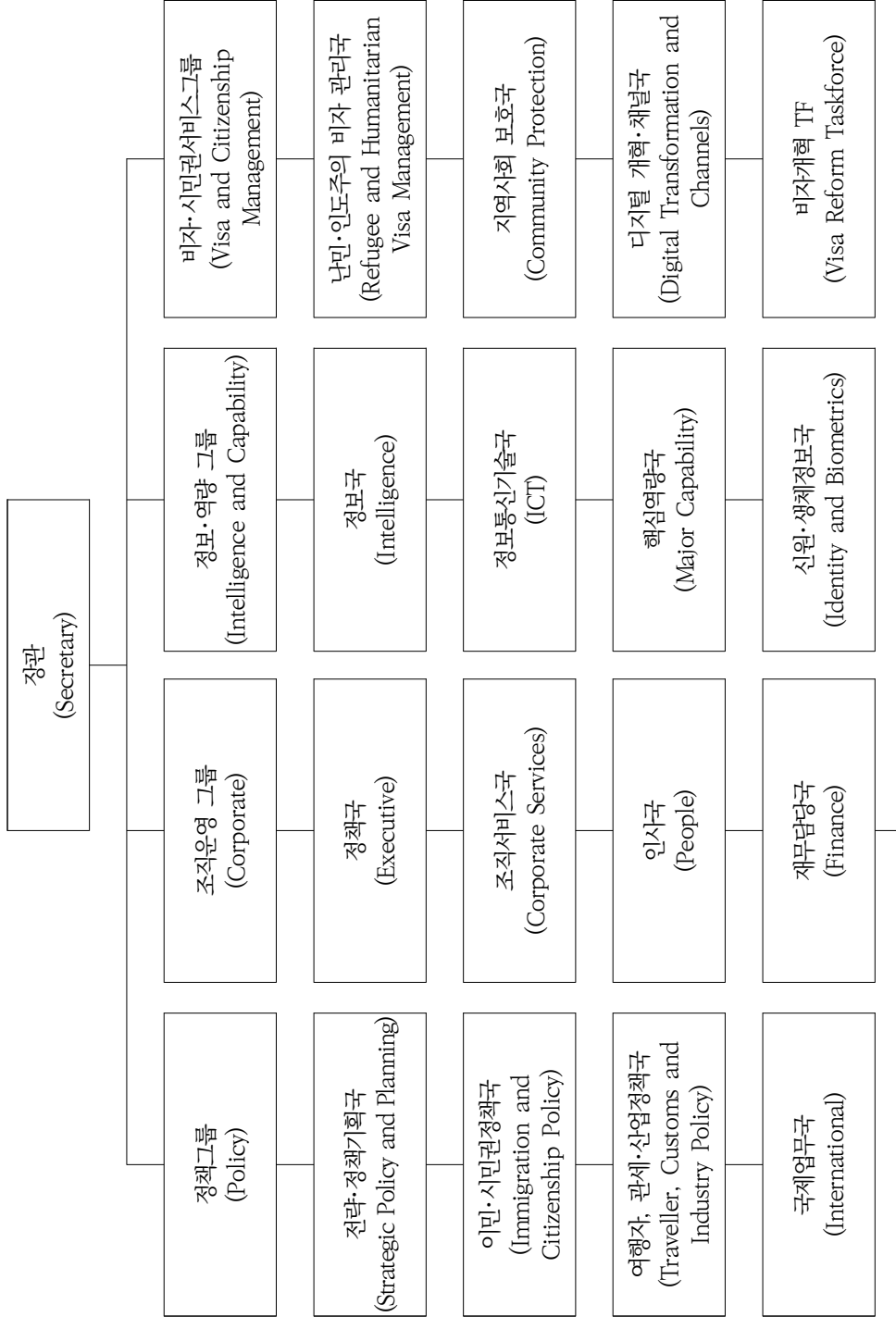
- 호주는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와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에서 통관 관련 행정을 관할함
- 과거 통관 관련 행정은 통관 중앙조직인 관세국경보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서 담당했으나 2014년부터 이민국경보호부(DIBP)에 통합됨
 - 관세국경보호청은 1901년에 설립된 무역 및 세관국(Department of Trade and Customs)을 전신으로 하며, 이후 1975년에 경찰 및 세관국(Department of Police and Customs), 2008년 관세국경보호청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음
- 국경수비대는 2016년 신설된 조직으로 주요 임무는 호주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여행과 무역을 지원하는 역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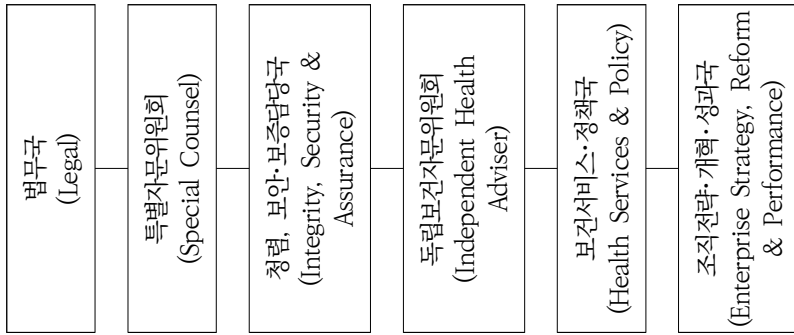
- 이민국경보호부는 이민과 관세 국경(Customs border) 정책을 담당함¹⁴⁾

- 이민국경보호부의 주요 임무는 국경보호와 국경을 넘는 사람 및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는 것임
 - 호주 사무소 및 해외 사무소를 포함해 52개 지역 사무소가 있음
- 동 조직은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그룹, 조직운영그룹, 정보역량그룹, 비자시민권서비스그룹으로 분류됨
- 정책그룹은 전략정책기획국, 이민시민권정책국, 여행자·관세·산업정책국, 국제업무국으로 구성됨
 - 전략정책기획국은 국경보호를 위한 전략목표 수립, 전략목표 실현에 필요한 국경보호능력 달성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책임을 가짐
 - 이민시민권정책국은 시민권, 해외난민의 인도적 재정착,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동시에 관광,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입국정책 관장, 노동, 비즈니스 및 인적자원 등의 경제 이동성 관련 정책을 담당함
 - 여행자·관세·산업정책국은 여행자 분과, 무역·관세 분과, 신뢰무역업자·기업 참여분과로 구성됨
 - 국제업무국은 i) 아시아 분과 ii) 미국, 유럽, 동, 아프리카 분과 iii) 태평양, 과도기 이슈 분과 iv) 지역 차 TF v) 제네바 공사참사(minister counsellor) vi) 아시아 공사참사(minister counsellor) vii) 동아시아 지부장(Regional Director East Asia) viii) 동&아리카 지부장(Regional Director Middle East &Africa) ix) 동남아시아 지부장(Regional Director South East Asia) x) 남아시아 지부장(Regional Director South Asia) xi) 유럽 지부장 (Regional Director Europe) xii) 미국 지부장 (Regional Director Americas) xiii) 메콩지역 지부장(Regional Director Mekong) xiv) 남태평양 총독(Commander South Pacific)으로 구성됨
 - 조직운영 그룹은 관리국, 조직 서비스국, 인사담당국, 재무담당국, 법무국, 청렴보안보증담당국, 보건서비스정책국, 조직전략개혁성과국으로 구성됨

14) 호주 이민국경보호부(DIBP) 홈페이지, www.border.gov.au, 검색일자: 2019. 8. 19.

[그림 2-1-1] 호주 이민국경보호부(DIBP) 조직도(2017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p. 169, <그림 69>

40 제2편 통관제도

- 정보역량그룹은 정보국, 정보통신기술국, 핵심역량국, 신원생체정보국으로 구성됨
- 비자·시민권서비스그룹은 비자·시민권 관리국, 난민·인도주의 비자 관리국, 지역사회 보호국, 디지털 개혁·채널국, 비자 개혁 TF로 구성됨

- 국경수비대는 이민국경보호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국경, 조사, 법규준수, 구류/억류 및 집행 기능을 종합함

- 국경수비대의 주요 직무는 사람과 물품의 합법적인 통행, 불법 물품 관련 조사 및 집행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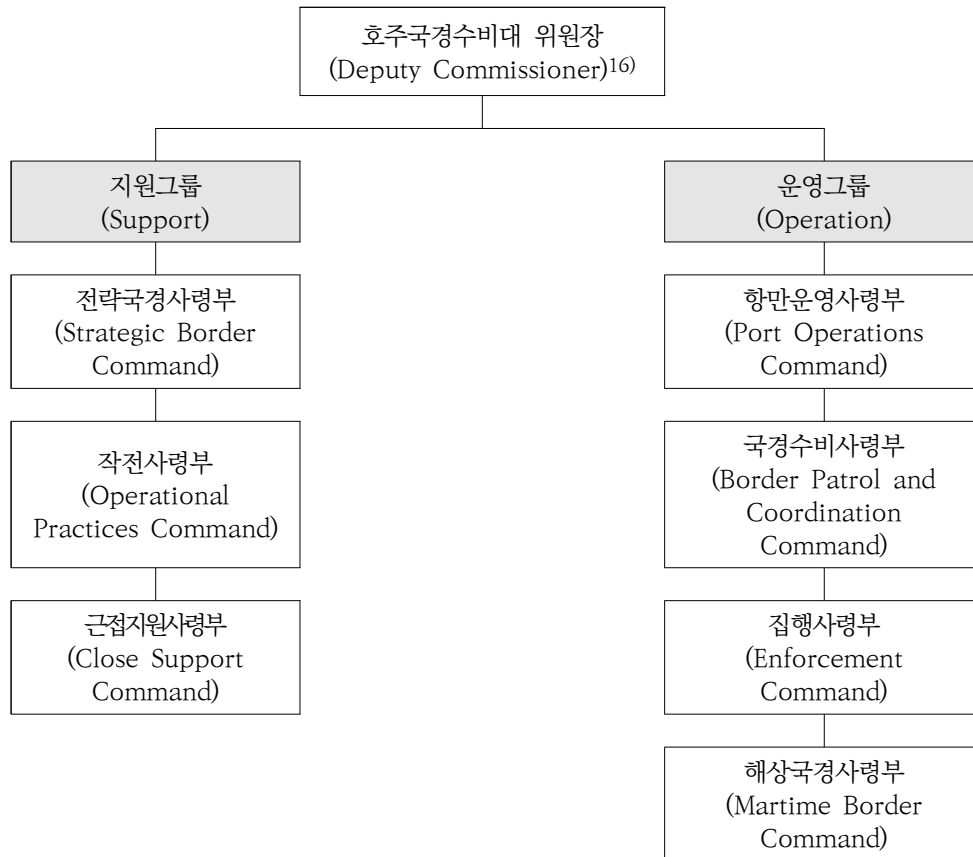
- 동 조직은 크게 운영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운영부서는 물품 및 화물 관리와 관련한 모든 운영상의 활동을 관할하며 지원부서는 국경시스템관리, ABF 해외사무소 운영 및 조직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동 조직은 2017년, 2018년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부서 명칭과 관련 업무가 조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 지원그룹은 2017년 국경관리국, 국경수비대역량국, 아동·지역사회·정착국, 불법이민자억류관리국에서 2019년 전략국경사령부, 작전사령부, 근접지원사령부로 변경됨
 - 운영그룹은 2017년 해상국경사령부, 전략국경사령부, 억류·법규준수·추방국, 조사국, 합동기동대에서 2019년 항만운영사령부, 국경수비사령부, 집행사령부, 해상국경사령부로 변경됨

- 동 조직 개편은 기존부서의 명칭 및 업무 변경과 더불어 세관회계감사, 이민자 구류/억류 업무를 별도로 그룹(Group)으로 분리해 관련 업무를 강화함¹⁵⁾

15) Wolters Kluwer 기사, <http://regulatingforglobalization.com/2019/08/12/the-abf-announces-a-new-initiative-building-on-an-old-concept/>, 검색일자: 2019. 8. 19.

- 세관회계감사그룹(Customs Deputy Comptroller-General Group)은 관세 및 국경 수입, 통관현대화, 통상서비스, 여행자, 현대노예와 인신매매(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이민자 구류/억류 그룹(Immigration Detention Group)은 이민자구류/억류, 이민자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그림 2-1-2] 호주 국경수비대(ABF) 조직도(2019년)



자료: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us-subsite/files/abf-org-structure.pdf>, 검색일자: 2019. 8. 19.

16) 청장급

2. 관계법령

- 통관 관련 법은 호주 「관세법(Customs Act of 1901)」을 기본으로 하며 동법은 총 4개 Section, 17개 Part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법」은 상품의 수출입, 관세행정, 금지품목, 처벌규정, 반덤핑 관세 등에 대해 규정함

〈표 2-1-1〉 호주 「관세법(Customs Act of 1901)」의 구성

Volume	Part	Part
1	I	Introductory
	II	Administration
	III	Customs control examination and securities general
	IV	The importation of goods
	IVA	Depots
	V	Warehouses
	VAAA	Cargo terminals
	VA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beverages
	VAA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excise-equivalent goods
	VB	Information about persons departing Australia
	VI	The exportation of goods
	VIA	Electronic communications
	VII	Ships' stores and aircraft's stores
	VIII	The duties
	X	Drawbacks
	2	IX
X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XI		Agents and customs brokers
XII		Officers
XIIA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prohibited items

〈표 2-1-1〉의 계속

Volume	Part	Part
	XIII	Penal Provisions
	XIV	Customs prosecutions
	XV	Tenders for rights to enter goods for home consumption at concessional rates
	XVA	Tariff concession orders
3	XVB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nti-dumping duties
	XVC	International Trade Remedies Forum
	XVI	Regulations and by-laws
	XVII	Miscellaneous
4		Endnotes

자료: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19>,
검색일자: 2019. 8. 19.

- 「관세법(Customs Act of 1901)」과 별도로, 「통상법(Commerce Act 1905)」은 통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동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 검역에 대한 규정, 수입 금지와 허위 표기에 대한 처벌 규정, 수출금지와 허위 표기에 대한 처벌 규정, 몰수 등에 대해 규정함

〈표 2-1-2〉 호주 「통상법(Commerce Act of 1905)」의 구성

Part	Title
Part I Preliminary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1A General administration of Act in relation to imports 2 Incorporation 3 Interpretation 4 Application of trade description
Part II Inspection of imports and exports	5 Inspection of imports and exports 6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표 2-1-2〉의 계속

Part	Title
Part III Imports	7 Prohibition of imports not bearing prescribed trade description 8 Imported goods found in Australia without prescribed trade description 9 Importation of falsely marked goods 9A Imported goods found in Australia with false trade description 10 Forfeiture of falsely marked goods 10AA Country of origin representations do not contravene certain provisions
Part IV Exports	10A Application of Part 11 Prohibition of exports not bearing the prescribed trade description 12 Penalty for applying false trade description to exports 13 Exportation of falsely marked goods 14 Marking of goods for export
Part V Miscellaneous	15 Review of decisions 16 Trade description disclosing trade secrets 17 Regulations

자료: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65>,
검색일자: 2019. 8. 19.

- 이외에도 「신부가가치조세법」, 「신고급자동차세법」, 「신와인균등세법」, 「금융거래 보고법」, 「수입식품통제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서 관세 및 통관에 관해 규정함¹⁷⁾

17)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p. 36.

II. 관세 신고와 납부 및 관세평가

1. 관세 신고와 납부

가.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 호주는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입업자로 관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지님
- 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1장(서문) 4항(정의)에 따라 관세의 과세물건은 호주 관세 영역(항구)에 도착한 때에 성립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 물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물품을 통제하는 자로 규정함¹⁸⁾

나. 과세표준 및 관세율

-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액이 결정됨

18) 호주법령검색,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01>, 검색일자: 2019. 9. 23.

- 호주는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가격 산정 시 FOB(Free on Board)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FOB 조건은 운임(해상, 항공)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를 채택하고 있음

- 호주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용되어 있으며,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 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종량세를 적용함
 -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포도주에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주종은 종량세를 적용함

-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물품신고 후 관세의 납부나 징수를 위해 당해 관세채무의 금액을 확인함
 - 수입신고는 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2.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수입물품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와 특별소비세(Excise Tax), 통관처리수수료가 부과됨

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 부가가치세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임

- GST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됨
 - GST 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 등 간접세는 폐지됨

나. 특별소비세(LCT, WET)

- 호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고급 자동차, 주류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 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162항에 따라 고급자동차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세부 시행령은 Luxury Car Tax Act에 근거함
 - 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105A항에 따라 고급자동차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세부 시행령은 Wine Equalisation Tax Act 1999에 근거함
- 호주로 수입되는 자동차 중 67,525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3%의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LCT)가 부과됨¹⁹⁾
 - 2019/2010년 기준으로 연료효율자동차는 가액 75,526호주달러, 그 외 자동차는 67,525호주달러임
 - 연료효율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1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luxury-car-tax-rate-and-thresholds/#LCTthreshold>, 검색일자: 2019. 9. 23.

〈표 2-11-1〉 고급차량세 부과 현황

회계연도	연료효율자동차	그 외
2019-20	\$75,526	\$67,525
2018-19	\$75,526	\$66,331
2017-18	\$75,526	\$65,094
2016-17	\$75,526	\$64,132
2015-16	\$75,375	\$63,184
2014-15	\$75,375	\$61,884
2013-14	\$75,375	\$60,316
2012-13	\$75,375	\$59,133
2011-12	\$75,375	\$57,466
2010-11	\$75,375	\$57,466
2009-10	\$75,000	\$57,180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luxury-car-tax-rate-and-thresholds/#LCTthreshold>,
검색일자: 2019. 9. 23.

- 호주로 수입되는 와인은 과세가격의 29%에 수입관세와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이 와인균등세(Wine Equalization Tax)로 부과됨²⁰⁾
- 와인균등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알코올 함량이 1.15% 이상이며, 주류의 크기나 포장에 상관없이 적용됨²¹⁾
 - 적용 주류는 포도주(including sparkling and some fortified wine), marsala 포도주, 과실주, 야채주, 사과주, 페리주, 꿀주, 사케임

2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Wine-equalisation-tax/Products-WET-applies-to/>, 검색일자: 2019. 9. 23.

2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Wine-equalisation-tax/Products-WET-applies-to/>, 검색일자: 2019. 9. 23.

다. 통관처리수수료(Import Processing Charges)

- 통관처리수수료는 「통관처리수수료법(Import Processing Charges Act 2001)」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처리를 위한 행정당국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임²²⁾
 - 동법 제5항 구간별 통관수수료(Amounts of import processing charges)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통관처리처(해상, 항공/우편)와 수입물품의 가격 구간에 상응하여 통관처리수수료가 부과됨

- 2001년 제정된 동법은 2014년에 한차례 개정된 뒤 2016년 개정안을 현행법으로 하여 통관처리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가격 구간별로 부과됨²³⁾
 - 1차 개정안의 기본골자는 수입화물가치(consignment value)가 AU \$10,000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처리비가 인상된다는 내용임
 - 이외에 AU \$1,000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비가 면제되며, AU \$1,000 초과 AU \$10,000 미만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비용이 적용됨
 - 2차 개정안은 AU \$1,000 초과 AU \$10,000 미만인 경우와 AU \$10,000 이상인 경우 모두 인상됨
 - 2016년 1월 1일부터 수입통관처리비(Import Processing Charges, 이하 IPCs) 요금을 인상·운영함

22) 「통관처리수수료법」 조희,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4C00024>, 검색일자: 2019. 9. 23.

23) 1차 개정은 2013년에 수입통관처리비개정안(The Import Processing Charges Amendment Bill 2013)이 캔버라 연방국회를 통과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표 2-11-2〉 호주세관 수입통관처리비 시행 현황(2019년 현행)

신고유형	화물가치	운송편	개편 전	개편 후
전자신고	\$1,000 이하	해상/항공/우편	0.00	0.00
	\$1000 초과~\$10,000 미만	항공/우편	\$40.20	\$50.00
		해상	\$50.00	
	\$10,000 이상	항공/우편	\$122.10	\$152.00
해상		\$152.60		
서류신고	\$1,000 이상~\$10,000 미만	항공/우편	\$48.85	\$90.00
		해상	\$65.75	
	\$10,000 이상	항공/우편	\$122.10	\$192.00
		해상	\$152.60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CustomsNotices/2015-44.pdf>, 검색일자: 2019. 11. 4.

3. 관세평가²⁴⁾

- 호주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16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 과세가격 산정방식으로 거래가격, 동일상품, 유사상품, 연역방식, 산정방식, 합리적 기준 방식이 있음²⁵⁾

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호주 「관세법」 제158항에 따르면, 거래가격이란 호주로 수입되는 물품에 실제로 지불되는 가격으로 물품 가격 외에 포장, 운반,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임²⁶⁾

24)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과세가격이란 종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25) 「Customs Act」 1901, Sec.16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01>, 검색일자: 2019. 9. 23.

- 다양한 산정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며 수입자는 거래가격을 호주달러로 계산해 과세가격을 산정함²⁶⁾
 -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통관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됨

- 거래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이를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세 가격 변동 시 세관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함

-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 수입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동일상품 및 유사상품(Identical goods value and similar goods value)

- 동일상품(identical goods) 및 유사상품(similar goods) 방식은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단위가격을 해당 수입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임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품목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26) 「Customs Act」 1901, Interpretation of transaction cost, http://www5.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01124/s158.html, 검색일자: 2019. 9. 23.

27) 「Customs Act」 1901, Sec.154,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files/instructions-guidelines-customs-valuation.pdf>, 검색일자: 2019. 9. 23.

다. 연역(Deductive value) 및 산정(Computed value)²⁸⁾

- 연역방식(deductive)은 국내(호주)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 거래가격,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호주에서 거래된 가격에 특정 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
- 산정방식(computed)은 거래가격, 동일물품, 유사물품, 공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채택하는 방식임
- 호주에서 수입 상품이 생산될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과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 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라. 합리적 기준(Fall-back value)

- 합리적 기준(fall-back) 방식은 이상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함
- 합리적 기준방식은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

28) 「Customs Act」 1905 sec 161C, 161D, 161E

Ⅲ.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1. 품목분류

- 호주의 관세품목 분류는 「관세법(Tariff Act of 1995)」을 통해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국제표준 6단위에 두 단위를 더한 8단위를 사용함²⁹⁾
 - 동 제도는 1983년 세계관세기구(WCO)의 상품 명칭 및 분류 통일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시행됨

- 2016년 「관세법」상 품목분류 관련 개정 법안(Customs Tariff Amendment 2017 Harmonized System Changes Bill)이 상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개정에 따른 신설규정이 적용됨³⁰⁾

29)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 검색일자: 2019. 9. 23.

30)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No.2016/34, 개정전문은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2017-harmonized-system-changes>, 검색일자: 2019. 9. 23.

- 1995년 「관세법」상 품목분류표(스케줄3)의 97개 챗터 중 41개 챗터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약 950개 규정에 대해 개정됨³¹⁾
 - 특히 챗터 3, 29, 38, 44, 84~87, 96에서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 품목분류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와 발광 다이오드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를 작성하는 등의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라 특정 어류 및 열대림에서 생산된 물품의 무역 감시를 강화해 식량안보 목적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세율표 개정
 -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정보 동의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및 지속적인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지원하는 특정상품의 모니터링
- 한편 호주는 1971년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옴³²⁾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감면(Tariff Concession Order) 적격성을 판단함
 - 수입통관 중에 실시간으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수입통관이 예정된 새로운 물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제도임
 - 관세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두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임³³⁾

31) 호주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95)」 2018년 개정판, file:///C:/Users/hminpark/AppData/Local/Packages/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d8bbwe/TempState/Downloads/C2019C00035VOL02%20(1).pdf, 검색일자: 2019. 8. 13.

32) 이상엽, 이민선, 김미영,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 51.

33) 행정규칙(administrative arrangement)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26, Tariff Advices를 따름

2. 관세율 제도

가. 관세율 수준³⁴⁾

- 호주는 개방형 국가로 주변국인 뉴질랜드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평균관세율을 유지함
- WTO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관세율은 2.5%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1.2%와 2.7%로 농산물의 관세수준이 2배가량 낮음
 - 2017년 수입액 기준 전체 품목의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은 4.3%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2.4%와 4.4%로 조사됨

〈표 2-III-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단위: %, 십억달러(USD))

구분	기준년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평균 MFN 관세율	2018	2.5	1.2	2.7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2017	4.3	2.4	4.4
수입액		208.0	13.0	195.1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9*, p. 49.

-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를 비교했을 때, 농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중이 더 컸으며, 상대적으로 비농산물에 고관세율을 적용함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WTO 양허관세율 기준 31.43%, MFN 실행 관세율 기준 76.8%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각각 21.0%, 46.9%로 농산물보다 낮음

34)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9*, p. 4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orld_tariff_profiles19_e.htm, 검색일자: 2019. 8. 13.

- 2017년 수입액 기준 농산물의 53.9%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반면, 비농산물의 47%가 무관세 적용을 받음
- 50% 초과~100% 이하의 고율관세 구간은 비농산물로만 구성되어 있음

〈표 2-III-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단위: %)

구분		무관세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31.3	43.6	17.4	3.8	3.5	0.4	0	0
	2018년 MFN 실행관세	76.8	22.7	0.1	0.1	0.4	0	0	0
	2017년 수입	53.9	42.1	0.2	0.5	3.4	0	0	0
비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21.0	17.7	28.8	6.5	7.6	4.7	2.4	0
	2018년 MFN 실행관세	46.9	53.1	0	0	0	0	0	0
	2017년 수입	47.0	52.9	0	0	0	0	0	0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9*, p. 49.

- 품목별로 살펴보면, WTO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의류로 41.4%이나 MFN 실행관세가 4.6%이고 최대 적용관세도 5%임
- 반면 호주의 주력 수출품목인 낙농제품의 WTO 양허관세율은 4.3%이며, MFN 적용 관세는 3.6%로 비교적 낮았지만 최대 적용관세율이 23%로 가장 높았음
- 호주는 낙농제품을 제외한 품목 전반에서 무관세 수입 비중이 높고 최대 관세율도 산업별로 5% 내지 10% 수준의 저율관세가 적용됨

〈표 2-III-3〉 품목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동물제품	1.5	69.2	16	0.4	92.8	5	0.4	90.2
낙농제품	4.3	20	23	3.6	76.2	23	0.5	44.1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3.7	24.1	29	1.4	71.2	5	1	52.9
커피, 차	3.9	50	17	1	79.2	5	0.7	66.7
곡물 및 그 조제품	2.7	26.9	17	1.1	76.7	5	1.5	35
종자, 기름	3.3	30.1	14	1.5	70.5	5	0.4	75.8
설탕 및 과자류	6.4	0	15	1.8	61.8	5	0.1	17.7
음료, 담배	10.6	3.9	25	3.6	28.4	5	1.2	43.8
면섬유	1.2	40	2	0	100	0	0	100
기타 농산물	2	30.2	20	0.3	94.7	5	0.5	94.4
어류 및 수산물	0.6	79.4	10	0	99.6	5	0.8	85.8
광물, 금속	6.7	21.9	45	2.7	45.5	5	10.6	44.6
석유제품	0	100	0	0	100	0	10.5	100
화학제품	9	9.4	55	1.7	65.2	5	10.7	51.5
목제품, 종이제품 등	6.9	26.4	25	3.3	34.7	5	3.9	13.8
직물	18.2	13.5	55	4.2	16.4	5	2.1	10.6
의류	41.4	6.7	55	4.6	8.1	5	3	2.4
가죽, 신발 등	15.2	9.9	55	4.1	17.6	5	2.6	2.4
비전기기계	8	21.6	50	2.8	42.8	5	13.8	43.2
전기기계	9	39.2	45	2.9	42.5	5	10.8	58.9
운송기기	12.5	10.6	40	3.4	32.2	5	18.4	25.9
기타 제조업 제품	5.5	41.9	40	1.4	72.7	5	6.8	69.9

자료: WTO, *World Tariff Profiles 2019*, p. 49.

나. 관세율표의 구성

-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운영하고 있음
 - 앞의 6단위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것으로 국제 공통임
 - 부(sections)는 상품군별 분류
 - 2자리 류(chapters)는 종류별 및 가공도별 분류
 - 4자리 호(headings)는 동일류 내의 품목 종류별 및 가공도별 분류
 - 6자리 소호(sub-headings)는 동일호 내의 품목의 용도별 및 기능별로 분류

- 호주의 관세율표는 6개의 열(Column)로 구성됨
 - 첫 번째 열에는 품목번호로 4단위(호), 6단위(소호), 8단위(자국분류)가 표기됨
 - 두 번째 열에는 통관 및 무역자료수집을 위한 호주 통계부호임
 - 세 번째 열에는 수량단위가 표기됨
 - 네 번째 열에는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품명이 표기됨
 - 다섯 번째 열에는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표기됨
 - 여섯 번째 열은 관세양허규칙(TCO)란으로 관세면제 품목일 경우 표기됨

[그림 2-III-1] 관세율 조회 화면

Reference Number	Statistical Code	Unit	Goods	Rate#	Tariff concession orders
2612			URANIUM OR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2612.10.00	15	kg	- Uranium ores and concentrates	Free	
2612.20.00	16	kg	-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Free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3/section-i/chapter-1>, 검색일자: 2019. 8. 11.

- 관세율정보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일반 관세율은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https://archive.homeaffairs.gov.au/busi>)에 접속해 Cargo support, trade and goods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를 클릭 → 화면 왼쪽의 2012 Tariff classification > Schedule 3 - Listing of Goods, their classification and duty rates에서 확인 가능함³⁵⁾
 - Schedule3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Goods를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 가능함

- 우리나라는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5) 내무부홈페이지, <https://archive.homeaffairs.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 검색일자: 2019. 8. 13.

60 제2편 통관제도

-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HS Code 6자리부터 확인 가능)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對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 가능함

다. 관세율의 종류

- 호주의 관세율 종류에는 기본관세, 특정 국가(Specific Countries) 특혜관세, 관세양허규칙(Tariff Concession Order), 감면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있음³⁶⁾
 -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임
 -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함
- 기본관세율은 호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호주 관세율표상 Schedule 3에 해당함
- 특정 국가 특혜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일 경우 특혜관세율을 적용함
 - 호주 관세율표상 Schedule 1에 해당함
 - 관세율표상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함

36) 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131항~제166항,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01>,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661&natnCd=AU>, 검색일자: 2019. 9. 20.

- 특정 국가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FIC, 최빈개발도상국, DC 적용 개발도상국, DCS 적용 개발도상국, DCT 적용 개발도상국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FIC(Forum Island Countries)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임³⁷⁾
 - DCS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특정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DCS 세율 표기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제품(대한민국 포함)은 기본관세율(General rate)이 적용됨³⁸⁾
 - DCT는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임³⁹⁾
 - DCT 세율이 없고 DCS 세율이 있는 경우 DCS 세율이 적용되며, DCT 및 DCS 세율 모두가 없는 경우 기본관세율(Generalrate)이 적용됨

〈표 2-III-4〉 특혜관세 적용 국가

구분	해당 국가
FIC	쿡아일랜드,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Науру,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최빈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디부티, 적도기니, 아스마라,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동티모르
DC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디부티, 적도기니, 아스마라,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37) 호주관세율표 Schedule 1. Part 1.,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1>, 검색일자: 2019. 9. 20.
 38) 호주관세율표 Schedule 1. Part 4.,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1>, 검색일자: 2019. 9. 20.
 39) Schedule 1. Part 5.,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1>, 검색일자: 2019. 9. 20.

〈표 2-III-4〉의 계속

구분	해당 국가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동티모르, 보스와나, 쿡아일랜드, 피지,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나미비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DSC	국가는 알바니아, 알제리,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바르바도스, 바레인,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카메룬,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가봉,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고,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세인트루치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디네스,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DCT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자료: 호주관세율표 Schedule 1.,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1>, 검색일자: 2019. 9. 20.

- 관세양허규칙(Tariff Concession Order)은 수입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
 -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적용 만료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세율표상 제6열에 TCO 적용 여부가 표기됨

- 감면세율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감면관세율임⁴⁰⁾

40)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4>, <https://www.abf.gov.au/tariff-classification-subsite/files/guidelines-schedule-4.pdf>, 검색일자: 2019. 9. 20.

- 호주 관세율표상 Schedule 4에 해당함
- 호주 수입물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총 55개의 물품에 대한 감면 조건 및 감면대상을 규정함⁴¹⁾
 - 감면규정 대상품목은 학술연구, 문화예술, 국제단체 및 외교관용품,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 및 승객의 물품, 재수입, 재수출, 기부에 의한 증여품, 트로피·상장·메달, 소액물품, 장애인물품, 특정 용도물품 등임
 - 예를 들어 Schedule 4의 과학물품, 도구, 기기(Scientific goods, instruments and apparatus)를 보면 감면세율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속서(D)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협력에 대한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그림 2-III-2] 감면세율(General Concession) 예시

Item 1 – Scientific goods, instruments and apparatus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to which Annex D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greement, or Annex D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Protocol, applies; or	
(b) Of a scientific nature and covered by an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another country or other countries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Duty Rate: Free	Treatment Code: 701
GST: Payable	GST Exemption Code: N/A
Instrument: Yes, by-law	By-law Numbers: 1301137, 1301139

41)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4>, <https://www.abf.gov.au/tariff-classification-subsite/files/guidelines-schedule-4.pdf>, 검색일자: 2019. 9. 20.

- 그 외에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음
-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수출로 호주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대해 기본관세율에 추가적으로 부과함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보조금 지급으로 호주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 추가적으로 부과함
 -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함

〈표 2-III-5〉 HTS상 협정세율 규정

구분	규정
Schedule 4a	Singaporean-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5	US-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6	Thai-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7	Chilean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8	ASEAN-Australia-New Zealand (AANZ)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8B	Trans-Pacific Partnership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9	Malaysian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10	Korean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11	Japanese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Schedule 12	Chinese originating goods are not entitled to a free rate of duty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 검색일자: 2019. 9. 20.

IV. 감면 및 환급

1. 관세의 감면제도

가. 관세감면제도

- 호주의 관세감면제도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mendment (Schedule 4) Act 2012)」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관세율법」상 Schedule 4는 총 15개 분류에 따라 총 55개 품목에 대한 개별 물품의 설명과 관세율로 구성된 내용을 규정하며, 세부내용은 [부록]을 참고
 - 15개 분류는 과학, 교육 또는 문화 관련 물품, 국제기구 및 외교관 등에 대한 물품, 개인물품, 국내로 되돌아오는 물품, 국외로 수출 예정인 물품, 기부 또는 유산 관련 물품, 트로피·메달 등의 수상품 관련 물품, 소액물품, 장애인용품, 섬유·의류 또는 신발류, 운송수단, 로봇 또는 시제품, 제조 관련 물품, 석유 관리 세금 면제품, 기타 잡화 등이 있음

나. 관세양허규칙(TCO)

1) 개요

- 관세양허규칙(Tariff Concession Order, 이하 'TCO')은 호주 내에서 대체가능 품목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호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 대체가능 품목은 해당 수입물품에 상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호주산 제품을 말함
- TCO 제외 상품(excluded goods)에는 식료품과 의류 그리고 승용차를 포함하는 특정 종류의 상품이 있음

2)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 수입물품에 대해 TCO 혜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신청서(양식 B443)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모든 정보와 관련한 첨부 파일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 TCO 신청서 양식은 국경수비대 사이트(<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oncessions-system/tariff-concession-orde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진행 절차에 따라 국경수비대에서는 해당 신청서가 유효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만약 신청서가 유효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처리되며, 세부 내용은 호주 관세양허관보(Tariff Concessions Gazette)에 공개됨

- 국경수비대는 150일 이내에서 각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기한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함
- 상기 결정을 위해 국경수비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신청서
 - 신청서에 대한 이의제기(이의제기는 TCO 신청서가 제출된 후 5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
 - 국경수비대에 의한 추가 문의 결과
- TCO 적용을 받고 국내로 반입한 모든 물품은 양허대상이 되며, 신청자의 물품뿐만 아니라 TCO 설명이 적용되는 모든 물품은 양허받을 자격이 있음
- 한편 호주의 국내 제조업체는 관세양허에 반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관세양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다. 특정 투입물(CIM)에 대한 관세감면제도⁴²⁾

1) 개요

- 호주는 제조품을 위한 특정 투입물(Certain Inputs to Manufacture: CIM)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제조품을 위한 특정 투입물은 화학제품, 플라스틱, 종이제품, 금속 재료 및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물품 등임
 - 수입 원료 또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42) 호주 BEP,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Certain-Inputs-to-Manufacture>, 검색일자: 2019. 6. 10.

2) 자격기준

- 특정 투입물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특정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할 것
 - 수입물품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현지 생산량보다 특정 최종 제품을 생산할 때 성능상의 이점이 있음을 입증할 것
 -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

- 특정 투입물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총 93개 품목으로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종이 제품(46개 품목)
 -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 및 제품(47개 품목)

3) 신청 방법

- 특정 투입물의 관세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정책 및 지침(Policy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을 숙지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정책 및 지침과 신청서 양식은 해당 사이트(<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Certain-Inputs-to-Manufacture#key-docu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신청서 승인

- 신청서가 접수된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물품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 내용이 포함된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결정은 보통 2년까지 지속되며 2년마다 신청이 필요함

- 또한 신청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포함된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음

2. 관세의 환급제도

- 호주의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관세규정(Customs Regulation 1926)」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⁴³⁾
 - 「관세법」 제168조에서 관세환급제도(duty drawbacks)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호주의 관세유예제도(Tradex)는 국내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Tradex Scheme Act 1999」와 「Tradex Scheme Regulations 2018」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관세유예제도(Tradex)란 관세청이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Goods and sales Tax, GST)에 대한 사전면제권(up-front exemption)을 부여해줌으로써 수입 시점에서 관세납부로 인한 현금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함
- 한편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WTO(2015) 자료에 따르면 2013/14년에 지급된 호주 관세환급의 가치는 6,270만달러로 기록하였으며, 관세환급의 주요 수혜 품목은 자동차와 담배 그리고 알코올 산업이었음⁴⁴⁾

가. 관세환급제도

- 관세환급제도는 호주 국내에서 물품 제조에 사용되었거나 제조(처리)를 거친 수입품 또는 중고품을 제외한 수입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됨⁴⁵⁾

43) 「관세법」 제168조

44) WTO, *Trade Policy Review: Australia*, 2015. 4, p. 67.

45) 「관세규정」 제129조 제(1)항

- 다음의 관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입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관세규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환급 및 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 「관세규정」 제126B조에 따른 태국 원산지 상품
 - 「관세규정」 제126C조에 따른 칠레 원산지 상품
 - 「관세규정」 제126D조에 따른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NZ) 원산지 상품
 - 「관세규정」 제126DA조에 따른 말레이시아 원산지 상품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의 환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⁴⁶⁾
 - 수출 당시 물품의 과세가격(FOB가격 기준)이 수입 당시 과세가격의 25% 이하인 물품의 경우
 - 물품에 지불된 수입관세가 이미 환불되었을 경우
 - 연료(fuel) 제품의 경우
 - 해당 연료와 관련하여 연료세(fuel tax)에 대한 공제 또는 조정이 없는 경우
 - 물품이 검사 또는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호주에서 사용된 경우⁴⁷⁾

- 수입관세의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국경수비대에 신청할 수 있음⁴⁸⁾
 - 다만 환급의 사유가 수입상품의 파손, 도난, 변질 등의 사유에 기인할 경우에는 세관 또는 검역소에서 상품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함

- 수입관세의 환급금액은 다음의 3가지 계산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청구자가 계산한 환급액과 함께 자체 평가(self-assessment)를 기준으로 처리됨
 - 개별 선적물 기준: 수출품과 직접 대응되는 수입 서류를 기준으로 함
 - 평균 또는 대표 선적물 기준: 저가의 대량 물품의 경우 주로 사용됨

46) 「관세규정」 제133조

47) 「관세규정」 제131조 제(3)항

48) 「관세규정」 제128A조 제(3)항

- 일정 기간 동안의 대표적인 물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동일 물품에 적용함
- 전가(imputation) 기준: 수입 서류가 없는 경우와 같이 관세의 납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주로 사용됨
 -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물품 매입가격의 30%로 함
- 다만 모든 방법하에서 수입관세의 환급 청구액은 수출물품에 지불된 수입 관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⁴⁹⁾

나. 관세유예제도(Tradex)

1) 개요⁵⁰⁾

- 관세유예제도(Tradex)란 호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GST)에 대한 면제를 사전에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함
 - 동 제도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환급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이며, 수입자가 수출상품에 대해 이미 지불한 관세를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세 면제가 이루어짐
- 관세유예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수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되거나 가공 또는 가공된 후 수출되거나 수출되는 다른 상품에 통합되는 상품 등임
 - 수출은 수입업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물품은 1년 이내에 수출해야 함

49) 「관세규정」 제135조

50) 호주 BEP,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Tradex-Scheme#key-documents>, 검색 일자: 2019. 6. 3.

72 제2편 통관제도

- 다만 최종 상품이 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려는 상품 또는 호주에서 생산되는 경우 소비세가 부과되는 알코올, 담배, 석유 등의 제품은 제외함
 - 상기 상품의 수량제한은 없음

2) 자격기준⁵¹⁾

- 관세유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하는 물품이 직접 수출되거나 수출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야 함
 - 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한 호주에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해당 상품을 수출할 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기록관리 및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규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함
- 관세유예물품은 관세유예 신청서에 명시한 수입물품이며,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함
 - 사업장에서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는 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소비세 등의 다른 종류의 세금이 적용되는 물품

3) 신청 방법⁵²⁾

- 신청 방법은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감독기관(Ausindustry)에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양식 및 세부 안내 자료는 해당 사이트(<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Tradex-Scheme#key-docu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서면으로 작성될 것

51) 「Tradex Scheme Act」 제5항

52) 「Tradex Scheme Act」 제10항

- 승인된 양식에 따라 작성될 것
- 신청과 관련된 상품의 종류와 설명을 명시할 것
 - 관세유에 수입물품을 모두 기재하고, 2단위 품목분류를 명시하여 수입물품을 설명할 것
 - 신청서에 명시하는 품목분류에 관한 세부정보는 국경수비대 웹사이트(<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 또는 전화(131 881)를 통해 문의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
- 신청서 양식에 표시된 방식으로 서명될 것
- 또한 수입 수하물 가운데 수출용 원재료 등으로 얼마나 사용될지 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4) 신청 승인⁵³⁾

- 관세유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감독기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요건이 충족됨을 협의하고 확인함
- 신청서가 접수된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감독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허가서를 송부함
 - 관세유에 허가번호(Tradex order number)
 - 수입통관에 사용되는 통관번호(instrument number)
 - 관세유에 허가가 발효되는 날짜
 - 관세유예물품의 설명, 2단위(Chapter) 및 4단위(Heading) 품목분류번호(HS CODE)
 - 관세유예물품 이용 요건

53) 「Tradex Scheme Act」 제11항

- 만약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부 사유서를 송부하며, 이러한 경우 감독기관에게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 항소 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음

5) 허가의 유효성⁵⁴⁾

- 관세유예의 허가는 업체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감독기관이 이를 취소할 때까지 유효함

- 감독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유예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가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 허가자의 사망 또는 허가업체가 청산하는 경우
 - 허가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기타 다음의 상황을 감독기관이 인지하는 경우
 - 관세유예제도의 핵심적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잘못 또는 호도성 정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유예관세를 미납하는 경우

6) 장부기록 보존의무⁵⁵⁾

- 관세유예제도를 신청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장부기록 보존의무를 준수해야 함
 - 신청업체는 관세유예물품이 처분된 이후 5년간 적절한 장부기록과 회계시스템을 관리 보관해야 함
 - 제3자가 유예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허가업체가 확보할 의무가 존재함

54) 「Tradex Scheme Act」 제14항~제20항

55) 「Tradex Scheme Act」 제22항~제23항

- 처분은 물품 수출 또는 국내 소비나 사용을 위한 판매를 포함함
- 또한 다음과 같은 관세유예물품의 거래와 가공작업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해야 함
 - 유예물품의 보관 또는 유예물품이 체화된 물품의 보관
 - 유예물품이나 체화된 물품의 국내 소비 또는 사용 여부
 -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목적으로 유예물품이나 유예된 수입물품이 체화된 물품의 처분 또는 거래 여부
 - 유예물품 또는 체화된 물품의 수출
 - 유예관세의 납부

7) 허용되는 소비 또는 사용⁵⁶⁾

- 관세유예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 또는 사용을 허용함
 - 호주에서의 우발적인 손상
 - 호주에서의 우발적인 파괴
 - 상품의 수출되기 전에 호주에서의 검사 또는 전시
 - 상품이 수출되기 전에 발생한 우발적 사용
 - 상품이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ques)인 경우

- 다만 호주에서 상품이 추가적으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56) Tradex Scheme Regulations 제7항~제8항

V. 원산지제도

- 호주의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됨
 - FTA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Customs Act 1901)」을 따르며, 관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및 양허표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을 따름
 - 특혜원산지 증명과 검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별 FTA의 협정을 따름

- 그 밖의 원산지 관련 제도로는 특혜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Origin Advices)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호주의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에 관한 사안을 심사함

1. 비특혜원산지제도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는 「무역표기법(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1905)」과 「무역표기규정(Commerce (Import) Regulations 1940)」에 따라 대상 물품과 표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란 물품의 생산 또는 포장 및 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나 당사자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말함
 - 만약 무역표기 대상물품이 해당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호주로 수입되기 전에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가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하며, 원산지 표기(labeling)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물품은 압류될 수 있음⁵⁷⁾
 - 무역표시 대상물품은 수출입하는 때에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세관에 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됨
 - 무역표시 대상물품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벌금의 경우 210호주달러(AUD)가 적용됨⁵⁸⁾

- 「무역표시규정(Commerce (Import) Regulations 1940)」에 따른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⁵⁹⁾
 - 의약품, 비료, 종자, 식물, 신발을 포함한 섬유 제품 및 의복, 보석류, 가죽 및 가죽제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도자기 및 도자기 제품, 주방용품, 전기 기기 및 장치, 장난감, 담배 및 담배 제품, 시멘트, 타일, 시계 등

- 상기 대상 품목은 상품의 설명과 관련된 다음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⁶⁰⁾
 - 사전에 포장된 상품 이외의 상품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가능한 한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함

57)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requirements/labelling>, 검색일자: 2019. 8. 19.

58)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requirements/labelling>, 검색일자: 2019. 8. 19.

59) 「COMMERCE (IMPORTS) REGULATIONS 1940」 Part II Trade descriptions REG 7

60) 「COMMERCE (IMPORTS) REGULATIONS 1940」 Part II Trade descriptions REG 8

- 사전에 포장된 상품의 경우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는 물품의 포장 또는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읽을 수 있는 문자로 포함되어야 함
 - 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국가의 이름
 - 중량 또는 수량이 명시된 경우에는 중량 또는 수량이 총량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요구되는 사항과 모순되거나 모호한 경향이 없도록 표시되어야 함
-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신발과 관련된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s)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신발에 적용되는 무역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 규정 15B를 참고

2. 특혜원산지제도

- 특혜원산지는 특정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함
- 특혜원산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일방적·호혜적 성격의 특혜관세와 쌍무적 성격의 특혜관세로 구분됨
 - 일방적·호혜적 성격의 특혜관세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와 태평양제도 포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가 있음
 - 쌍무적 성격의 특혜관세 조치에는 FTA에 의한 특혜관세가 있음
- 호주는 별도의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제도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호주 외무성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TA를 제외한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입통관 시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함

가. 일반특혜관세

- 「관세법(Customs Act 1901)」에서는 특혜공여국에서의 제조 또는 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에서는 호혜대상국과 특혜세율을 규정함
 - 살아있는 동물 등을 제외하고는 최종공정이 수행된 국가 또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Part VIII Division 1A에 명시되어 있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됨
- 일방적·호혜적 성격의 특혜관세에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와 태평양제도 포럼(Forum Islands)에 대한 일반특혜관세가 있음

1)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국

-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경우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CD)과 동티모르(East Timor)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됨⁶¹⁾
- 세관고지(Australian Customs Notice)에서는 최빈국을 원산지로 하는 최빈국 생산 제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⁶²⁾

61)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free-trade-agreements/developing-countries-or-least-developed-countries>, 검색일자: 2019. 8. 19.

62) 호주 「관세법」 제153NA조

- 최빈국 또는 동티모르를 원산지로 하는 비제조원료품(unmanufactured raw products)의 경우
 - 최종 제조공정이 최빈국에서 수행되었거나 공장도가격 기준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상기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입 품목마다 최빈국에 해당하는 국가 코드를 원산지 필드에 입력하고 특혜 표시 필드에 다음의 특혜 코드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함⁶³⁾
- 최빈국의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어 면세 입국 시 “L”로 입력
 - FIC의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어 면세 입국 시 “F”로 입력
 - DC의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5%의 특혜 마진을 주장할 때 “A”
 - 관련 특혜원산지규정이 충족되지 않아 특혜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X”

2) 태평양제도 포럼⁶⁴⁾

- 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이란 호주 및 뉴질랜드가 남태평양도서국가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협정을 말함
- 1981년 1월 1일에 발효된 특혜무역협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PICs(Pacific Islands Countries) 및 PIFS(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에 소속된 태평양 도서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제한 없는 시장접근(unrestricted market access)을 허용한바 있음
- 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의 체결국에는 호주, 뉴질랜드, 쿡제도, 피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키리바시, 니우에 등이 있음

63)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03/48

64)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free-trade-agreements/forum-islands-\(including-fiji\)](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free-trade-agreements/forum-islands-(including-fiji)), 검색일자: 2018. 8. 19.

- 태평양제도 포럼 회원국이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에는 일반적인 경제적·상업적·기술적 협력에 대한 조항, 덤핑 물품, 보조금 지급 물품,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 관세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TCF 부문(섬유·의류·신발)에 대해서는 별도 특혜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바 있음

나. FTA에 의한 특혜관세

- FTA 발효에 따른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Customs Act 1901)」에 반영하고 관세양허율표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에 삽입(insert)하여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행법률을 운영하고 있음

- 호주가 체결한 FTA에 따라 특혜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과 같음⁶⁵⁾
 - 아세안-뉴질랜드(AANZFTA)
 - 캐나다-호주(CANATA)
 - 호주-칠레(ACI-FTA)
 - 태평양제도포럼(피지 포함)
 - 한국-호주(KAFTA)
 - 일본-호주(JAEPa)
 - 말레이시아-호주(MAFTA)
 - 호주-뉴질랜드(ANZCERTA)
 - 싱가포르-호주(SAFTA)

65)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free-trade-agreements>, 검색일자: 2019. 8. 19.

- 태국-호주(TAFTA)
- 호주-미국(AUSFTA)

- 특혜원산지 국가의 상품과 다른 국가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FTA와 특혜제도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존재함⁶⁶⁾
 - 서로 다른 협정 및 여러 유형의 상품에 대한 단일 협정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원산지규정이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최종 제조(Final process of manufacture), 운송기준(Consignment), 미소기준(De minimis) 등이 있음

- FTA 협정에 따른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등을 제외한 원산지증명과 원산지검증 등의 원산지 절차 관련 사항은 FTA 협정을 준용하고 있음
 - 서류 보관의 의무와 벌칙 그리고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에 관련 규정은 별도로 국내법에 수용하지 않음

3. 원산지 사전심사제도⁶⁷⁾

가. 개요

-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ice Ruling)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며 국경수비대의 의견을 안내하는 일종의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지님
 -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청의 이행지침(Practice Statement No. 2009/13,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66) 호주 국경수비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PRACTICE STATEMENT*, FILE NO: 2008/011956

67) Practice Statement No. 2009/13,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 동 제도는 국경수비대의 관세평가 및 원산지국(Director Valuation and Origin Section) 무역 서비스과(Trade Services Branch)에서 담당하고 있음
- 담당부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심사를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ice Ruling)의 형태로 제공함
 - 심사는 캔버라 이민 및 국경 보호국에서 작성하여 확인하며, 세부 정보는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Origin Advice Rulings”을 참고하도록 함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Origin
 -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Origin Advice Rulings
- 또한 FTA 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원산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자우편과 유선을 통해 답변을 제공함
 - Email: origin@border.gov.au
 - Phone: (02) 6275 6556

나. 신청절차

-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해당 FTA별 서식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 사전심사 서식은 크게 3가지 ① 호주-미국 FTA(B178 서식) ② 호주-태국 FTA(B184 서식) ③ 기타 FTA(B659 서식)로 구분됨

-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및 판례검색시스템(Tariff and Precedents Information Network)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전자신청을 통해 5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함
 - 다만 특혜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국경수비대는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사 결과를 회신해야 함⁶⁸⁾
 -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심사 결정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 만약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3T조 제(1)항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과 관련 벌칙이 면제되지 않음

- 사전심사의 결정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화주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효력을 가지며, 다른 수입자에게 양도될 수 없음

- 사전심사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음
 - 법령 개정 및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심사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68) 호주-미국 FTA의 경우 당해 협정문 제6.3조에 따라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VI. 보세제도

1. 개요

- 호주의 보세제도는 보세창고(warehouse)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세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면허(warehouse licence)가 필요함⁶⁹⁾
- 보세창고에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은 국내 소비 또는 수출용으로 규정하고 있음⁷⁰⁾
- 보세창고에서 허용되는 활동은 특정 유형의 제품을 보관, 혼합, 포장 해체, 재포장 및 포장하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⁷¹⁾

69) 「관세법」 제79조

70) 「관세법」 제99조 제1항

71) 「관세규정」 제63조

2. 보세창고

- 보세창고 면허는 보세창고에서 수행할 면허에 명시된 소비 가능 제품의 혼합, 포장, 가공, 제조, 거래 또는 기타 활동을 허가할 수 있음⁷²⁾
 - 보세창고에서 허용되는 모든 활동은 물품의 안전과 연방 정부에 지불하는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됨⁷³⁾

- 보세창고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 작성 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함⁷⁴⁾
 - 서면으로 작성될 것
 - 면허와 관련된 장소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것
 - 해당 장소에 보관되는 물품의 종류를 명시할 것
 - 심사관이 고려해야 하는 각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할 것
 - 관세청장이 고려해야 하는 사안의 세부사항을 명시할 것
 - 규정된 기타 정보를 포함할 것
 - 창고 면허 신청 수수료를 동봉할 것

- 보세창고 면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관감사관은 해당 면허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관감사관이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됨⁷⁵⁾

- 보세창고 면허의 교부 또는 갱신에 관한 비용은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함⁷⁶⁾

72) 「관세법」 제79조 제3항

73)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licensing/warehouses/about>

74) 「관세법」 제80조

75) 「관세법」 제81A조 제1항~제2항

76) 「관세법」 제85A조 제1항

- 다만 분할지불금의 납부와 청구 금액 또는 분할지불금을 납부해야 하는 종료일의 전날 또는 그 날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한하지 않음⁷⁷⁾
- 보세창고 자격의 정지와 관련하여 세관감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세창고 면허소지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⁷⁸⁾
 - 보세창고에서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는 보세창고의 물품과 관련된 수입의 보호가 부적절한 것이어야 함
- 보세창고 면허 소지자의 의무는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창고에 쌓아두고 검사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며, 그러한 물품을 정확하게 계량하는 계량장치를 제공해야 함⁷⁹⁾
 - 또한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사무공간과 가구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노동력과 물품을 제공해야 함⁸⁰⁾
- 보세창고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언제든지 강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창고를 열람하고 출입할 수 있으며, 창고에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⁸¹⁾
- 보세창고에서의 재포장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소유자가 해당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 또는 재포장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⁸²⁾
- 또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창고의 물품은 폐기될 수 있음⁸³⁾

77) 「관세법」 제85A조 제2항

78) 「관세법」 제86조

79)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a)호~제(b)호

80)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c)호~제(d)호

81) 「관세법」 제91조

82) 「관세법」 제92조

83) 「관세법」 제94조

- 관세청장은 물품의 가치가 지불해야 할 관세보다 적을 때에는 물품의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물품을 파기하고 관세 납부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보관 물품의 폐기는 물품의 소유자가 창고 면허 소지자에게 물품과 관련하여 지불할 임대료 또는 비용을 지불하는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세를 납부한 후 보세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은 소유자의 위험부담으로 남아 있고 세관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해당 물품은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보세창고 면허소지자가 제거할 수 있음⁸⁴⁾
 - 이에 따라 특별한 권한 없이 보세창고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무상물품을 수령할 수 없음⁸⁵⁾

- 보세창고에서 혼합 또는 포장을 허가하는 경우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혼합 또는 포장될 수 있음⁸⁶⁾
 - 혼합 또는 포장된 물품은 국내 소비를 위해 운송되어야 함

-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허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규정에 따른 별도의 표(Schedule 1AAA)를 참고할 수 있음⁸⁷⁾
 - 80% 또는 이상의 알콜성 미발효 에틸 알콜, 에틸 알콜 및 기타 증류주, 변경된 것
 - 80% 미만 알콜성 특정 미변성 에틸 알콜, 주류, 리큐어 및 기타 향료 음료 등
 - 제조되지 않은 담배 및 담배 잔여물(tobacco refuse) 등
 - 시가, 쉐련, 시가릴로, 대용담배 등
 - 기타 제조 담배 및 제조 담배의 대체물 등

84) 「관세규정」 제92조 제1항

85) 「관세규정」 제92조 제2항

86) 「관세법」 제98조

87) 「관세규정」 제95AA조

〈표 2-VI-1〉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허용되는 물품

Schedule 1AAA—Prescribed goods	
(regulation 95AA and subregulations 95AB(1) and 98C(1))	
Goods classified to the following subheadings of the 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published by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i>	
2207.10.00	
2207.20.00	
<i>Certain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i>	
2208.20.10	
2208.20.90	
2208.30.00	
2208.40.00	
2208.50.00	
2208.60.00	
2208.70.00	
2208.90.00	
<i>Unmanufactured tobacco and tobacco refuse</i>	
2401.10.00	
2401.20.00	
2401.30.00	
<i>Cigars, cheroots, cigarillos and cigarettes, of tobacco or of tobacco substitutes</i>	
2402.10.01	
2402.10.02	
2402.20.01	
2402.20.02	
2402.90.00	
<i>Other manufactured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 and tobacco extracts and essences</i>	
2403.11.00	
2403.19.03	
2403.19.04	
2403.91.00	
2403.99.00	
Note:	The descriptive headings are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and are not part of the subheadings in the 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Ⅶ. 수출입규제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 호주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은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입 금지 물품 목록과 담배 제품의 규제 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⁸⁸⁾
 -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사전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가. 수출입 금지 물품 목록

- <표 2-IV-1>은 2019년 9월 기준 총 68개 품목의 수출입 금지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주로 식품, 동식물, 무기류 및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임⁸⁹⁾
 - 개별 품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사이트(<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에서 확인할 수 있음

88)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 검색일자: 2019. 10. 1.

89)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 검색일자: 2019. 9. 2.

〈표 2-Ⅶ-1〉 호주의 수출입 금지 물품 목록

구분	물품명	분류	유형
1	Anabolic and androgenic substance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Export
2	Antibiotic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
3	ANZAC	Intellectual property and cultural items	Import
4	Asbestos	Hazardous goods	Import
5	Australian native animals and plant species	Animals and plants	Export
6	Biological agents	Defence and Strategic goods	Export
7	Body armour and extendable batons	Weapons	Import
8	Cat and dog fur products	Animals and plants	Import/Export
9	Ceramic ware - glazed	Consumer products	Import
10	Certain chemical compounds	Defence and Strategic goods	Export
11	Chemical weapons	Weapons	Import
12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goods	Consumer products	Import
13	Cosmetics - toxic materials	Consumer products	Import
14	Credit cards - counterfeit	Consumer products	Import/Export
15	Cultural heritage goods	Intellectual property and cultural items	Import/Export
16	Cultural heritage goods from Papua New Guinea	Intellectual property and cultural items	Import
17	Defence and Strategic Goods	Defence and Strategic goods	Export
18	Dog collars - protrusions	Consumer products	Import
19	Dogs - dangerous breeds	Animals and plants	Import
20	Drugs and narcotic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
21	Endangered animal and plant species - CITES	Animals and plants	Import/Export
22	Erasers, novelty -. toxic materials	Consumer products	Import

〈표 2-Ⅶ-1〉의 계속

구분	물품명	분류	유형
23	Explosives, plastic	Hazardous goods	Import
24	Firearms and firearms parts, accessories and ammunition	Firearms	Import/Export
25	Fish	Animals and plants	Import
26	Fly swatters/mosquito bats - electronic	Consumer products	Import
27	Goods bearing an image of an Australian state or territory flag, coat of arms or seal	Intellectual property and cultural items	Import
28	Goods bearing an image of the Australian Arms, Flag or Seal of the Commonw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cultural items	Import
29	Growth hormones and substances of human or animal origin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
30	Hazardous waste	Hazardous goods	Import/Export
31	Human body fluids, organs and other tissue	Miscellaneous	Export
32	Ice Pipes	Miscellaneous	Import
33	Imitation firearms	Firearms	Import
34	Incandescent lamps	Consumer products	Import
35	Kava	Miscellaneous	Import
36	Knives and daggers	Weapons	Import
37	Laser pointers	Consumer products	Import
38	Lighters	Consumer products	Import
39	Money boxes, novelty - toxic materials	Consumer products	Import
40	New psychoactive substances and serious drug alternative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
41	Nuclear Material	Defence and Strategic goods	Export
42	Ozone depleting substances/synthetic greenhouse gases	Hazardous goods	Import/Export
43	Paintball markers	Firearms	Import
44	Pencils or paintbrushes - toxic materials	Consumer products	Import
45	Pepper and OC spray	Miscellaneous	Import

〈표 2-VII-1〉의 계속

구분	물품명	분류	유형
46	Pesticides and other hazardous chemicals	Hazardous goods	Import/Export
47	Polychlorinated Biphenyls, Terphenyls and Polyphenyls - Chemicals	Hazardous goods	Import
48	Pornography and objectionable material	Miscellaneous	Import/Export
49	Precursor substance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Export
50	Prescription medicine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Export
51	Radioactive substances	Defence and Strategic goods	Import/Export
52	Rough diamonds - Kimberley Process	Miscellaneous	Import/Export
53	Sanctioned countries/entities	Miscellaneous	Import/Export
54	Security Sensitive Ammonium Nitrate (SSAN)	Defence and Strategic goods	Import/Export
55	Signal jammers / signal jamming devices	Miscellaneous	Import
56	Soft air (BB) firearms	Firearms	Import
57	Suicide devices	Miscellaneous	Import/Export
58	Tablet Presses	Miscellaneous	Import
59	Therapeutic drugs, substances and goods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
60	Tobacco	Drugs, Medicines and Therapeutic Substances	Import
61	Tobacco - Chewing and oral snuff	Consumer products	Import
62	Tobacco - unmanufactured leaf and tobacco refuse	Animals and plants	Import
63	Toothfish	Animals and plants	Import/Export
64	Toys - toxic materials	Consumer products	Import
65	Viable material derived from human embryo clones	Miscellaneous	Import/Export
66	Warfare Goods and other Weapons	Weapons	Import
67	Wine and brandy	Miscellaneous	Export
68	Woolpacks	Miscellaneous	Import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 검색일자: 2019. 9. 2.

- 또한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 다만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 양잠: 모든 국가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 금지
 - 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 상기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세부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호주 세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입 여부를 결정함
 - 또한 검역 관련 부서(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 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위험분석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나. 담배 제품의 규제⁹⁰⁾

1) 개요

- 호주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담배 제품의 수입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담배 제품의 수입업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관세와 제세는 국경에서 지불해야 함⁹¹⁾
- 호주에서 대부분의 담배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상업용 및 개인용 담배 제품을 수입하려면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의 허가가 필요함
 - 담배 제품은 우편을 통해 수입할 수 없으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별도 조건을 따라야 함
- 호주 정부의 이러한 담배 제품에 관한 수입규제 조치는 공중 보건과 환경오염 그리고 담배로 인한 밀수 등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함
 - 2018년 7월 호주 정부는 담배 밀수 방지를 위하여 불법담배T/F(ILLICIT TOBACCO TASKFORCE)를 설립함
 - 이러한 불법담배T/F는 호주 국경수비대(ABF)의 주도하에 이민국경보호부, 범죄정보위원회(ACIC), 거래 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 연방검찰(CDPP), 세무서(ATO) 등으로 구성됨

90)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categories/tobacco>, 검색일자: 2019. 10. 1.

91) DEPARTMENT OF HOME AFFAIRS NOTICE No. 2018/35

2) 여행자에 대한 담배 제품 규제

- 호주로 입국하는 18세 이상의 여행자는 25개비의 담배 또는 25g의 담배 제품 및 시가에 대해 면세가 허용됨
 - 이러한 담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을 폐기 또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됨

- 지정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이를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1.5kg 이상의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또는 코담배(snuff)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허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https://www.productsafety.gov.au/contact-us/for-consumers/make-an-enquiry>)를 참고

3) 수입업자에 대한 담배 제품 규제

- 수입업자의 경우 특정 담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경수비대(ABF)에서 발급한 허가가 필요함
 -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하는 담배를 압류할 수 있으며, 최대 1.5kg의 시가 및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및 코담배(snuff)에는 예외가 적용됨

- 다음의 경우에는 담배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담배는 항공 또는 해상화물로 호주로 반입될 수 있음

- 해외에서 담배 제품을 호주로 가져오거나 보내도록 구매 또는 주문하는 경우
- 주문하거나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담배 제품을 보낸 경우
- 담배 수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담배 수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원하는 한도 내의 허가를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은 약 4주가 소요되며, 허가가 완료되면 유효기간을 공지함

2. 무역구제제도

- 수입규제조치는 일반적으로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로 구분되며, 이 중 반덤핑제도는 전 세계는 물론 호주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상계관세는 상대국 정부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세이프가드는 수출국이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음
- 호주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WTO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반덤핑 조치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미국, EC, 캐나다와 함께 1990년대 초반까지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였으며, 그 대상은 GATT 회원들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 한국과 같은 신흥 경제 국가였음⁹²⁾

92) 산업자원부,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무역투자연구원, 2007. 7, p. 67.

-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수입물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부터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례를 조사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함
 -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에서는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를 모두 관할하며, 사실상 동일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반덤핑위원회는 2013년 7월 신설되었으며, 반덤핑위원회 소관 부처는 2014년 2월 국경수비대에서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로 변경되었음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 호주의 반덤핑조치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규제정책으로 GATT 협정과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 ADA)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SCM)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 호주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음
 - 「Customs Act 1901(the Act)」, particularly Part XVB, and associated regulations
 - 「Customs Tariff(Anti-Dumping) Act 1975(the Dumping Duty Act)」
 - 「Customs Tariff(Anti-Dumping) Regulation」 2013
 - 「Customs Regulations」 1926
 -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CAA)」
- 2013년 6월 반덤핑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개정함바 있음⁹³⁾
 - 장관이 최소관세를 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인 고려를 제외시킴

93) 무역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세계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4. 9. 10, p. 39.

- 소급관세 규정을 관련 WTO 협정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을 포함했고 협의(consultation) 규정을 도입하여 적법 절차와 투명성을 높임
-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의 효과를 저해하는 적자 판매 등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수출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였으며, 우회수출방지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종료 규정을 도입함

2) 호주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

-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규제 현황은 2019년 9월 기준 총 6건 가운데 5건이 규제 중, 1건이 조사 중에 있음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철강제품(HS 72~73류)이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와판지(HS 48류)에 해당하는 A4복사용지에 대해서도 규제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계관세 대상 물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호주의 對한국 반덤핑 제소가 빈번한 철강, 화학, 금속, 제지 품목의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소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제소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호주의 반덤핑 조사기간은 매우 짧은 편으로 조사 신청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까지의 모든 소요기간이 205일에 불과하다는 특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2-Ⅶ-2〉 호주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

구분	한국 HS CODE	품목명	조사개시일	현황
1	3901.20, 3901.90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2019-06-24	조사 중
2	4802.5610	A4 용지 (A4 Copy Paper)	2018-03-19	규제 중
3	7213.10, 7214.20, 7227.90, 7228.30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2014-10-17	규제 중
4	7216.31/32/33/40/ 50, 7228.70	열연 철강 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2013-10-24	규제 중
5	7210.49, 7212.30, 7210.61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2012-09-05	규제 중
6	7306.30, 7306.61, 7306.69	철강재 파이프 (Hollow Structural Sections)	2011-09-19	규제 중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 검색일자: 2019. 9. 2.

- 한편 〈표 2-Ⅳ-3〉은 2019년 9월 17일 기준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의 덤핑 및 보조금 수입에 대한 업데이트 사례를 정리한 것임
- 가장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싱가포르, 태국, 미국에서 수입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조사가 개시됨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대만 태국에서 수입한 열연 철강 구조물류에 대해서는 면제, 재심, 계속(재심사) 등이 진행 중임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입한 풍력발전타워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에서 수입한 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진행 중임
 - 한편 유형별 공식 문서 등의 자료는 호주 반덤핑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음

〈표 2-Ⅶ-3〉 반덤핑위원회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사례

구분	품목명	유형	국가	최근 업데이트 날짜
1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Investigation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19. 9. 17.
2	열연 철강 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Continuation	일본, 한국, 대만, 태국	2019. 9. 16.
3	열연 철강 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Review	일본, 한국, 대만, 태국	2019. 9. 16.
4	열연 철강 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Exemption	일본, 한국, 대만, 태국	2019. 7. 19.
5	풍력발전타워 (Wind towers)	Continuation	중국, 한국	2019. 9. 3.
6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Review	중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2019. 8. 23.

자료: 호주 반덤핑위원회, https://www.industry.gov.au/regulations-and-standards/anti-dumping-and-countervailing-system/anti-dumping-commission-current-cases?field_adc_commodities_tid=All&field_adc_case_type_tid=All&field_adc_country_tid=2080&field_adc_next_milestone_tid=All&field_adc_new_updated_value=All&combine=, 검색일자: 2019. 9. 2.

나. 세이프가드

- 호주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자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임
- 호주의 세이프가드 조치 근거 법령은 「Productivity Commission Act of 1998」에 따름
 - 동 법령은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를 창설, 세이프가드 조사의 근간이 되는 산업 피해 조사의 근거 법령으로 기능함

- 과거 GATT 체제하에서 호주는 미국, EC, 캐나다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힘⁹⁴⁾
 - 상기 자료에 따르면 EC가 경제공동체로서 43회로 가장 빈번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하였으며, 단일 국가로는 호주의 세이프가드 조치 사용이 1975년부터 1979년의 기간 동안 16회나 되어 동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집중적으로 수입규제를 하였음

- 한-호주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의 상세 내용은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⁹⁵⁾
 - 양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관세철폐 종료 후 5년 동안 발동 가능
 - 발동기간은 2년이며, 1년간 연장 가능(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한도)
 -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 강화,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 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함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대국의 수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9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FTA/WTO 세이프가드제도 비교 및 동등주의 법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종보고서, 2015. 10, p. 11.

95) 관계부처 합동자료,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2014. 4, pp. 49~50.

3. 기타 비관세 장벽

가. 비관세 장벽 적용 현황

-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수입금지와 수량규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적인 규제 등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함⁹⁶⁾
 - 이론적으로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혼용되고 상호간에 명확한 구분이 곤란함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분명하게(sure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를 말함
 -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정보는 WTO 협정문에 따라서 WTO 회원국이 제출한 TBT 통보문 및 SPS 통보문을 포함하는 WTO I-TIP DB임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는 잠재적으로(potential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를 말함
 -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조치 정보는 UNCTAD가 WTO와 World Bank 등과 공동으로 구축한 UNCTAD TRAINS(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 DB임
- <표 2-IV-4>는 UNCTAD의 비관세장벽 DB를 기준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의 비관세장벽을 정리한 것임
 - 호주의 對 한국 비관세장벽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관련 제한 조치가 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량제한과 위생 및 식품위생(SPS) 각1건 그리고 무역기술장벽(TBT)이 4건씩 존재함

96) 최동근·김미진, 『UNCTAD의 비관세장벽DB에 나타난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2018. 2. 28, p. 5.

〈표 2-Ⅶ-4〉 호주의 對 한국 비관세장벽 규제 현황

(단위: 건)

요구 항목	현황	조치 수(전 세계)
수출 관련 제한 조치	규제 중	7(355)
수량제한	규제 중	1(85)
위생 및 식품위생(SPS)	규제 중	1(264)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중	4(834)

자료: UNCTAD, <http://trains.unctad.org/Forms/TableView.aspx?mode=modify&action=search>.
검색일자: 2019. 9. 6.

나. TBT 및 SPS

1) TBT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
- 〈표 2-Ⅳ-5〉는 UNCTAD의 비관세장벽 DB를 기준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의 TBT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2019년 9월 6일 기준 총 4건으로 조회됨
 - 호주의 對 한국 비관세장벽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고수의학장비(used veterinary equipment)가 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광물 및 금속광석·암석·모래 등이 1건을 차지함
 - 중고수의학장비는 뉴질랜드 이외의 우리나라와 여러 국가에 적용되며, 호주로 수입 시 (i) 해당 장비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한 항공편의 세부사항 (ii)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iii) 정해진 요건대로 취급되었으며 물품 취급에 사용된 방법 등이 첨부될 것이 요구됨

〈표 2-Ⅶ-5〉 호주의 對 한국 TBT 현황

구분	적용 품목	HS	관련 법령	법적 근거	시행일
1	중고수의학장비 (used veterinary equipment)	9018	Legislation.gov.au - Biosecurity Act 2015	Biosecurity (Prohibited and Conditionally Non-prohibited Goods) Determination 20161)	2016- 12-22
2	중고수의학장비 (used veterinary equipment)	9018			
3	광물 및 금속광석·암석· 모래 등	25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4	중고수의학장비 (used veterinary equipment)	9018			

주: 해당 법적 근거의 세부 내용은 해당 사이트(<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6L00932/Download>)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음

자료: UNCTAD, <https://trains.unctad.org/Forms/TableViewDetails.aspx?mode=modify>. 검색일자: 2019. 9. 6.

- 한편 호주의 TBT 조치와 관련된 이슈는 ‘담배 단순 포장 제한 규정’을 꼽을 수 있으며, 약 5년간 WTO 무역분쟁을 통해 호주의 TBT 조치가 TBT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임
 - ‘담배 단순 포장 제한 규정’에 따르면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로고가 찍히지 않은 진갈색 포장 상태로 판매되어야 함
 - 동 규정은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2년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WTO는 외국의 제소에 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호주의 담배 포장 제한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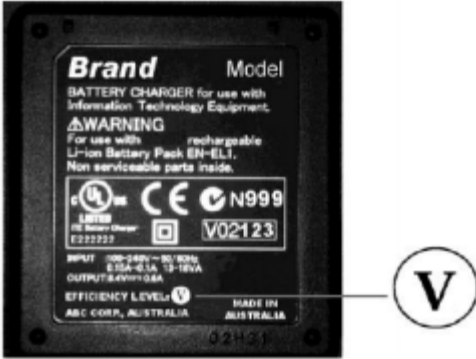
- 글로벌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법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담배 수출국인 쿠바,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호주를 WTO에 제소한바 있음

2) 우리나라의 호주 TBT 대응사례⁹⁷⁾

- 호주의 외부전원장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호주는 외부전원 장치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 5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4년 11월에 채택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함
 -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마킹기준인 ‘국제효율마킹규약(IEMP)’ 개정사항을 호주 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표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대부분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나, ‘V등급’으로 등록했던 제품의 경우 ‘VI등급’으로 라벨링하기 위해서는 제품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명확함을 호소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식서한(2014년 12월)을 통해 이를 질의하였고, 호주 당국은 2015년 1월 회신을 통해 ‘제품등록 변경을 해야 하지만, 변경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업체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밝힘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업계에 직접 전달하였고, 업계에서는 손쉽게 등급변경을 진행하여 수출하고 있음

9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5. 4, p. 55.

〈표 2-Ⅶ-6〉 호주 對 한국 외부전원장치 에너지효율 규제 사례

구분	내용
규제명	The proposed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External Power Supplies) Determination 2014
관련부처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목적	에너지효율
대상제품	외부전원장치(EPS, External Power Supplies)
HS 코드	8504. 4
규제내용	외부전원장치의 에너지효율 등급 'VI등급'을 신설
시행일	2014. 11. 26.
에너지효율 마킹 예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5. 4, pp. 55~56.

3) SPS

- 호주는 섬이라는 특성과 타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검역검사가 까다롭고 철저한 편임⁹⁸⁾
 -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에 취약하고 오세아니아 대륙만의 동식물 고유종이 많아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매우 민감함

98) 이지원, 『호주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2015. 7, p. 177.

- 수입식품의 검역 관련 정보는 호주 검역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과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에서 담당하고 있음
 - 농수산물축산물의 규제에 관련해서는 호주 검역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에서 담당하고 이외의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는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에서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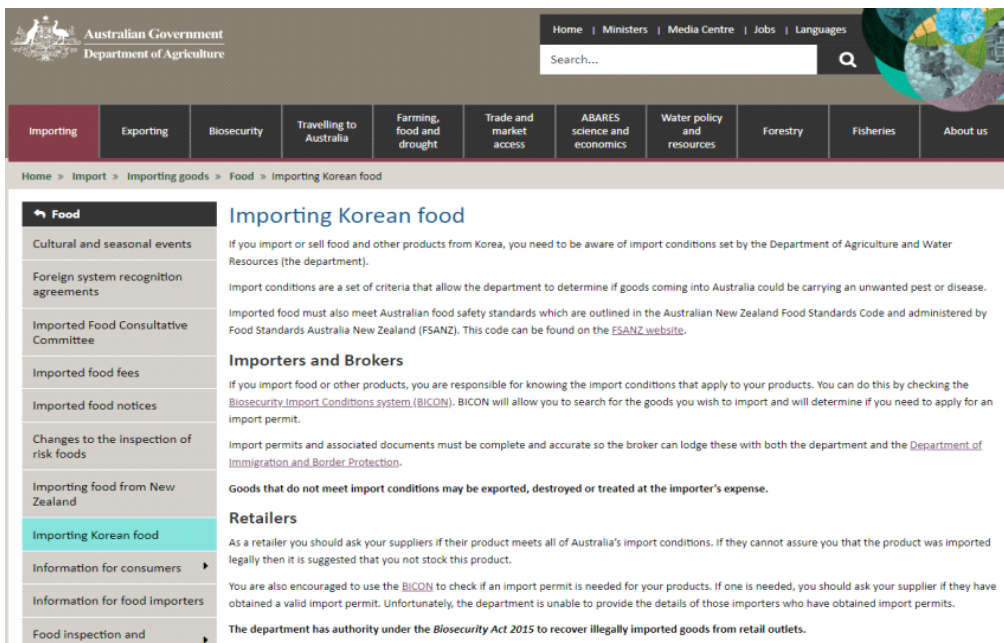
- 호주 검역검사국(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BICON)에서는 식품 수입허가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입대상품목에 대한 위험관리분석(Risk Management Analysis, RMK)을 실시하는데 시험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됨⁹⁹⁾
 - 위험관리분석(RMA)은 수입예상 품목에 대해 호주 검역검사국(BICON)에서 실시하는 조사방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는 일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운 품목에 대한 조사일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됨
 - 현재 여러 국가의 농수산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여부에 대해서도 위험관리분석(RMA)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사항은 호주 검역검사국 사이트 내 DB를 통해 사례별로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수입식품 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1993)」에 따라 식품 검역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함
 -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 농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호주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식품 중 위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식품에 대해 검사 및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함
 - 해당 규정에 해당 되는 품목은 raw milk cheese로 제조국 정부의 인증을 통해 호주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이전의 뉴질랜드에서 태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정부로 확대됐으며,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점차 그 숫자를 늘릴 것으로 알려짐

99) 호주 검역검사국, <https://bicon.agriculture.gov.au/>, 검색일자: 2019. 9. 6.

-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1년 일부 수입식품이 호주의 식품안전기준에 위반되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호주 검역청 웹사이트에서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음¹⁰⁰⁾
- 우리나라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 및 중개인에 대해서는 수입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파기될 수 있으며, 소매점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이 회수될 수 있음을 명시함
- 따라서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호주 검역검사국(BICON)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림 2-Ⅶ-1] 호주 검역청에 소개된 우리나라 수입식품에 대한 주의 내용



자료: 호주 검역청,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importing-korean-food>, 검색일자: 2019. 9. 6.

100) 호주 검역청,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importing-korean-food>, 검색일자: 2019. 9. 6.

다. 인증

1)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

□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 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나,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소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기술인증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¹⁰¹⁾

○ 구미지역의 인증이 있더라도 호주의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일부 품목에서는 호주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호주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은 개별 주(州)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주에서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규격이 요구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 주정부에서 승인한 제품은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함

가) QAS 인증¹⁰²⁾

□ QAS(Quality Assurance Services) 인증은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해 호주품질보증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마크 인증제도임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음

□ QAS 인증 대상 품목은 가정·산업·공업용 등의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재기기 및 경보기기, 건축 제품 및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등임

101)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2016. 12, p. 222.

102)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oceania/oceania_2.jsp, 검색일자: 2019. 9. 6.

- 승인절차는 공인 시험소 또는 QAS로부터 지정받은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은 후,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QAS로 제출하여 승인받음
 -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 No. 또는 QAS 마크를 제품상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을 띄고 있음

- QAS 인증은 형식 시험 인증(Type Examination Certification)과 표준 마크 인증(Standards Mark Certification)으로 구분됨
 - 형식 시험 인증은 관련규격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초기 공장검사 및 정기 사후관리 공장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제품에 표시할 Mark에 대한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 유지를 위한 연회비는 부가되지 않고 형식시험을 나타내는 특별한 Trademark logo도 없음
 - 표준 마크 인증은 ISO 9000을 기초로 한 품질 시스템 표준에 따른 제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해당 규격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이 요구됨
 - 요구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히 인증서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인증번호 및 Standards Trade Mark는 제품에 부착해야 함

나) TGA 인증¹⁰³⁾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호주 식약처(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의 관리 제도인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에 등록이 되어야 함

103)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380>, 검색일자: 2019. 9. 4.

- 호주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등록 및 표기되어야 하며, 사전에 TGA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
- ARTG 등록 및 TGA 인증 신청은 호주 현지 사업자인 수입업자와 대리인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TGA 인증은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GHTF)와 European Community(EC)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업체가 유럽 CE 인증을 받은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유럽 CE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호주의 TGA 인증을 받아야 함
-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AIMD) 등급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등급별로 적합성 평가와 제품 등록 요구사항 및 절차가 달라짐

2)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RCM)

- 호주의 전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해서는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Regulatory Compliance Mark: RCM)을 받아야 함¹⁰⁴⁾
 - 소비자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ERAC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의 등록을 요구하는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를 제정하였음

104) 호주 EESS, <https://www.eess.gov.au/rcm/regulatory-compliance-mark-rcm-general/>, 검색일자: 2019. 9. 4.

- [그림 2-IV-2]의 RCM 인증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으로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함

[그림 2-VII-2] 호주의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RCM) 마크



자료: 호주 EESS, <https://www.eess.gov.au/rcm/regulatory-compliance-mark-rcm-general/>,
검색일자: 2019. 9. 4.

- 이에 따라 모든 인증대상 제품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에 의해 취득한 RCM Logo와 RCM Number를 부착해야 함
 - RCM Solutions Pty Ltd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이 아닌 해외고객들을 위해서 RCM Logo와 RCM Number 취득을 위한 대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RCM 마크는 제품 자체에 부착되어야 하며, 강제품목과 관련하여 마킹할 시에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해야 함
 - RCM Logo와 Number는 원칙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며, 제품이 너무 작아서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재 내·외부나 태그 또는 RCM Solutions Pty Ltd이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음

라. 환경 관련 규제

- 호주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수호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호주 정부는 파리협약 비준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까지 배출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내세운바 있음
 - 또한 규제 기관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도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규제 기관은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기업들 또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서약한바 있음¹⁰⁵⁾

-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는 에어컨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과 냉장 진열 및 저장용 캐비닛의 에너지 효율 규제가 있었음

- (에어컨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제) 호주 정부는 2017년 5월 3일 에어컨에 적용되는 신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적용할 시기와 적용 예시 등을 발표함¹⁰⁶⁾
 - 동 규제안은 호주 기기 에너지 효율(E3) 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건강 및 안전을 목적으로 마련됨
 - E3 프로그램은 기기 에너지 효율(Equipment Energy Efficiency) 프로그램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동 운영하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제도를 말함
 - <표 2-IV-8>은 호주의 에어컨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을 나타낸 것임
 - 규제 대상은 HS Code 8415호에 해당하는 더블덕트 휴대용 에어컨, 싱글덕트 휴대용 에어컨 등임
 - 더블 덕트 휴대용 에어컨과 기타 에어컨 제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기존 에너지 라벨 또는 Zoned label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 이전 등록

105) ABC NEWS, <https://www.abc.net.au/news/environment/>, 검색일자: 2019. 8. 26.

106) 국가기술표준원, 『호주,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기계전 기전자시험연구원, 2017. 9, pp. 2~3.

된 제품은 기존 라벨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싱글덕트 휴대용 에어컨은 2019년 4월 1일부터 Zoned label을 의무 부착함

〈표 2-Ⅶ-7〉 호주의 에어컨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E3 프로그램)

Energy Rating Label	Swimming Pool Pumps Label	Zoned Energy Rating Label
		
<p>강제 라벨 적용 대상: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6 star로 구성 표기 사항: 시간당/연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효율등급, 모델명 등</p>	<p>자발적 라벨 적용 대상: 수영장 펌프 표기 사항: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전력 사용 소요비용(kWh 기준)</p>	<p>제품이 설치되는 장소의 기후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제품 성능 정보를 기재한 라벨 적용 대상: 온수기, 가스 난로 등 표기 사항: 제품 성능정보(냉난방, 소음 수준 등)</p>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호주,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기계전 기전자시험연구원, 2017. 9, pp. 2~3.

- (냉장 진열 및 저장용 캐비닛의 에너지 효율 규정) 호주 정부는 2018년 11월 16일 냉장 진열 및 저장용 캐비닛의 에너지 효율 요건 개정안을 발표함¹⁰⁷⁾
- 동 개정안은 해당 제품의 상업적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시키고 국제 시험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107) 호주 환경에너지부, <http://energyrating.gov.au/consultation/refrigerated-cabinets-determination-exposure-draft>, 검색일자: 2019. 9. 6.

- 주요 신규요건에는 2020년 1월까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냉장 캐비닛의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기 위해 유럽 표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여부
 -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등록했는지 여부
 - 규정된 에너지 소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적용 대상은 냉장 진열 캐비닛, 냉장 음료 캐비닛, 아이스크림 냉동 캐비닛, 아이스크림 스쿠핑(scooping) 캐비닛, 냉장 저장 캐비닛 등임
- 적용 예외 대상은 냉장 자판기, 제빙기, 식품 가공 및 저장용 캐비닛 등임

VIII. 행정구제제도

1. 개요

- 호주 「관세법」상 이의제기(appeal)의 대상에는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에 따른 결정이 있음
 - 행정 항소 재판소는 호주 연방 정부의 행정 결정의 준수법적 검토를 위해 존재하는 호주 준수법체계의 일부로 호주 정부 및 일부 비정부 기관에 의한 행정 결정의 다양한 범위의 독립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행정 항소 재판소는 행정적인 결정에 대해 검토할 일반적인 권한은 없으나 일반인 또는 장관의 지위에서 행정 항소 재판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행정결정에 대해 관할권을 부여받게 됨

- 불복청구는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법원의 합의체에 항소하며, 경우에 따라 최고법원인 대법원(High Court)에 항소함으로써 2단계가 보장될 수 있음
 - 호주는 연방제 국가이므로 법률 체계는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가 함께 관장하고 있는 구조이며 호주의 헌법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관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음

- 호주 「조세법령(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의한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음¹⁰⁸⁾
 -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비용은 부과되지 않음
 - 이의신청 기한은 최소 60일에서 최대 4년이며, 부과처분 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신청기한이 시작됨
 - 이의신청 시 필수 작성 내용은 이의 신청의 근거와 이의 신청 시 제출한 근거서류 등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내용 그리고 제출일자 및 서명이 있음
 - 이의신청의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는 56일(8주) 이내이며,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이의 신청자 또는 대리인과 접촉을 가지고 처리기한이 길어질 경우 협의를 통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함
 -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및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함

2. 행정불복제도

- 「관세법(Customs Act 1901)」에 따른 결정은 호주 행정 항소 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 이의제기(appeal)할 수 있음¹⁰⁹⁾
 -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며, 세부내용은 「관세법」 제273GA조 제1항에 열거된 개별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제28조(Working days and hours etc) 제2항~제3항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
 - 제35A조(Goods imported by post)에 따른 우편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

108) 국세청,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12, pp. 83~84.

109) 「관세법」 제273GA조 제1항

- 제58A조(Direct journeys between installations and external places prohibited) 제6항 C호에 따른 범죄 혐의에 대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았으며 해당 승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행된 경우
- 제67ED조(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에 따른 특정 종류의 저가화물과 관련하여 신청자를 등록하기로 한 결정
- 제67EK조(Renewal of registration)에 따라 특정 종류의 저가화물과 관련하여 등록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67EM조(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special reporter) 특정 종류의 저가화물과 관련하여 등록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
- 제67G조(Registering re-mail reporters)에 따라 개인 또는 파트너십을 전자 메일 보고자로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67G조 또는 제67J조에 따라 전자메일 보고자의 등록에 조건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
- 제67J조(Varying etc. conditions of registration)에 따라 재보고자의 등록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 제67K조(Cancelling the registration of a re-mail reporter)에 따라 전자우편 보고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결정
- 제69조(Like customable goods and excise-equivalent goods)에 따라 가정 소비재에 대한 허가를 거부 또는 조건을 부과 또는 허가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
- 제70조(Special clearance goods)에 따른 특별 통관 물품의 허가를 거부 또는 철회하기로 한 결정
- 제71조(Information and grant of authority to deal with goods not required to be entered)에 따라 재화를 가정 소비재로 인도할 권한을 거부하는 결정
- 제71C조(Authority to deal with goods in respect of which an import declaration has been made) 또는 제71DJ조(Authority to deal with goods in respect of which a warehouse declaration has been made)

- 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보세창고 신고와 관련된 물품의 취급 권한을 취소 또는 정지하기로 한 결정
- 제71E조(Application for movement permission)에 따라 특정 물품이 수입 또는 수입 후에 관세 통제 대상인 경우 물품의 이동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
 - 제77G조(Depot licences)에 따라 보세창고 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77J조(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may require applicant to supply further information)에 따라 보세창고 면허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77LA조(Variation of places covered by depot licence)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 면허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 및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기간을 하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77P조(Conditions of a depot licence—imported goods)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창고 허가 조건에 대해 연장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77Q조(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may impose additional conditions to which a depot licence is subject)에 따라 보세창고 면허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추가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 제77V조(Notice of intended cancellation etc. of a depot licence)에 따른 보세창고 면허 허가 정지의 결정
 - 제77VC조(Cancellation of depot licences)에 따른 보세창고 면허 허가 취소의 결정
 - 제102F조(Directions to cargo terminal operators or cargo handlers etc)에 따라 화물터미널 운영자 또는 화물취급업체에 대한 관세청장의 서면 지시에 따른 결정
 - 제105조(Certain customable beverage not to be entered for home consumption in bulk containers without approval of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제2항에 따라 대량 수입되어 가정용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 관세청장이 승인 또는 승인을 거부하는 결정

- 제114B조(Confirming exporters)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 또는 취소 또는 수정하기로 한 결정
- 제114C조(Authority to deal with goods entered for export)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을 처리할 권한을 취소 또는 정지하기로 한 결정
- 제118조(Certificate of Clearance)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와 관련된 통관 증명서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통관증명서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
- 제126조(Certificate of landing)에 따라 착륙증명서와 관련하여 물품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
- 제132B조(Declared period quotas—effect on rates of import duty)에 따른 할당량 관련 관세청장의 결정
- 제132C조(Revocation and variation of quota orders)에 따른 할당량 관련 철회 및 변경에 대한 관세청장의 결정
- 제161J조(Value of goods to be in Australian currency)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관보에 공지하는 환율의 결정
- 제163조(Refunds etc. of duty)에 따른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와 관련한 세관장의 결정
- 제164B조(Refunds of export duty)에 따른 수출관세의 환불 관련 관세청장의 결정
- 제165조(Recovery of unpaid duty etc)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부채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기로 한 결정
- 제168조(Drawbacks of import duty)에 따라 관세 환급 신청과 관련한 세관장의 결정
- 제176A조(Trusted trader agreement may be entered into) 제1항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ATT 공인)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는 관세청장의 결정
- 제178A조(Vari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rusted trader agreements) 제1항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ATT 공인)에 대한 계약을 변경 또는 정지 또는 종료하기로 한 관세청장의 결정

- 제269H조 제1항에 따라 관세양허규칙(TCO)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
- 상기 결정은 「행정 항소 재판소법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¹¹⁰⁾

-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에 따른 결정은 호주 행정 항소 재판소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 이의제기(appeal)할 수 있음¹¹¹⁾
- 상기 결정은 「행정 항소 재판소법(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¹¹²⁾

- 「관세법」 또는 「관세율법」에 따른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가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통지에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¹¹³⁾
- 행정 항소 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 또는 그러한 자에 대한 통지가 관련된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 항소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¹¹⁴⁾

110) 「관세법」 제273GA조 제2항

111) 「관세법」 제273H조 제1항

112) 「관세법」 제273H조 제2항

113) 「관세법」 제273K조 제1항

114) 「관세법」 제273K조 제2항

IX. 벌칙

1. 개요

- 호주 「관세법」에서는 전반적인 조항에 걸쳐 각각의 벌칙(Penalty)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에 대한 내용이 산재되어 있으며, 특정한 수출입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 편(編, Part)을 두고 있음
 - 제13편(Part XIII—Penal Provisions) 가운데 위험 물질의 수출·밀수출입·마약의 밀수출입·기타 수출입 관련 위반사항으로 구성된 수출입 관련 규정 위반사항과 관세유예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봄

-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법」 및 부칙에 의거한 위법행위는 금전적 또는 기타의 형벌에 의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¹¹⁵⁾
 - 「관세법(Customs Act 1901)」에서는 밀수출입을 규정하며, 「형법(Criminal Code)」은 마약의 밀수출입을 규정함
 - 「통상법(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1905)」에서는 허위 표시 물품에 대한 몰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115) 「관세법」 제5조

- 또한 「관세법」에 대한 위법행위는 「형법(Criminal Code)」 제2장 제2항이 적용됨¹¹⁶⁾
 - 다만 관세 기소(Customs prosecution)의 목적상 「형법」 제2.1절과 제2.2절 및 제2.3절이 적용되며, 제2.4절과 제2.5절 및 제2.6절은 적용되지 않음

- 한편 호주는 「관세법」 등 여러 법령에서 벌금(Penalty)을 규정할 때 penalty unit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국내법에서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함
 - 벌금은 해당 범죄에 규정된 벌금 단위 수와 penalty units를 곱하여 계산됨
 - penalty units를 도입하기 전 벌금 및 기타 요금은 일반적인 화폐 단위(파운드 또는 달러)로 규정되었으며, penalty units는 다양한 수수료와 요금을 빠르고 간단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됨
 - 호주의 각 주(州)에서는 고유한 벌금 단위가 있으며, 단위의 가치와 그 가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주마다 상이함

2. 관세형벌의 종류

가. 수출입 관련 규정 위반

1) 위험물질의 수출

- 위험 물질의 수출은 「관세법(Customs Act 1901)」에서 Tier 1과 Tier 2의 2단계로 구분하여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1단계(Tier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5년의 징역 또는 1,0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¹¹⁷⁾

116) 「관세법」 제5AA조

117) 「관세법」 제233BAA조 Special offence relating to tier 1 goods

- 1단계(Tier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정 성능 향상 약물과 특정 비마약 약물 그리고 기타 특정 물품 등임
- 2단계(Tier 2)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 또는 1,0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¹¹⁸⁾
 - 2단계(Tier 2)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투복, 나이프, 단검 및 유사물품, 화학혼합물, 살상 스프레이, 핵 또는 방사능 물질, 인체조직, 사람의 체액, 아동 포르노물, 위조된 신용카드 및 그밖의 위조된 카드 등임

2) 밀수출입

- 밀수출입은 「관세법(Customs Act 1901)」에 따라 처벌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밀수출입 및 밀수출입 물품을 운반하였으나 범죄를 저지른 때에 법원에 통지했을 경우 또는 법원이 범죄의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됨¹¹⁹⁾
 - 금지 물품의 수출입 규정을 위반한 때에 법원에 통지했을 경우 또는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됨¹²⁰⁾
 - 법원이 물품가치(value)에 해당하는 관세를 산정할 수 있을 시에는 물품 가치의 3배 이하 또는 1,000penalty unit 이하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 그러나 법원이 물품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118) 「관세법」 제233BAB조 Special offence relating to tier 2 goods

119) 「관세법」 제233조 제AB(1)항

120) 「관세법」 제233조 제AB(2)항

3) 마약의 밀수출입

- 마약의 밀수출입은 「형법(Crimes Act 1914)」에 따라 처벌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그 양(quantity)이 상업적인 양(commercial quantity)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5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그 양(quantity)이 시장성이 있는 양(marketable quantity)일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국경관리소에서 제한하는(border controlled) 양의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 또는 제한하는 양 이상의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마약을 밀수출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4) 기타 수출입 관련 위반

- 거짓으로 수출입 보고 또는 수량 및 내용 등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60penalty unit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¹²¹⁾
 - 특정 화물에 대해 허위 또는 호도성 진술을 하거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 본선적하보고(cargo report) 또는 양륙보고서(outturn report)에서의 진술이 허위 또는 중대한 특정 내용을 왜곡시키는 문제나 사안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생략하는 경우

- 한편 미수범 및 예비범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범죄

121) 「관세법」 제243V조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in cargo reports or outturn reports

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¹²²⁾

5) 허위 표시 물품 대한 몰수

- 허위 표시 물품에 대한 몰수(Forfeiture of falsely marked goods)는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허위 표시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¹²³⁾
 - 허위 표시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하는 경우에는 몰수가 적용됨¹²⁴⁾
 - 고의 또는 부주의(intentional or reckless)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¹²⁵⁾
 -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의 소유자 또는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허위 표시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만약 소유자 또는 수입자가 통지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몰수가 적용되지 않음

나. 관세유예제도 관련 규정 위반¹²⁶⁾

- 다음에 해당하는 관세유예제도 요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여러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관세유예 등록 항목의 변동을 14일 이내에 미고지하는 경우
 - 관세유예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변동을 7일 이내에 미고지하는 경우
 - 유예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변동 후 28일 이내에 관세를 미납하는 경우

122) 「관세법」 제236조~제237조

123) 「통상법」 제10조 제1항

124) 「통상법」 제10조 제2항

125) 「통상법」 제10조 제3항

126) 「Tradex Scheme Act」 제26항~제32항

-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장부기록 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감독기관이 제시한 요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 감독 공무원에게 부여된 심사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나 설비를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허위 또는 호도성 진술을 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관세유예제도의 개별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이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 개별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가산세는 10~60penalty unit으로 상이함
 - 상황 변동에 따른 통보나 장부기록 보관의무의 미이행: 30penalty unit
 - 유예관세 미납: 미납한 관세 상당
 - 감독기관이 지정한 요건 미충족: 60penalty unit
 - 사업장에서의 심사 지원 거부: 10penalty unit
 - 오류 또는 호도성 진술 또는 그러한 서류 제출: 징역 12개월
 - 관세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관이 위반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미납 가산세는 유예관세의 20% 상당이며, 위반통지서가 발급된 후 28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됨

X. AEO제도

1. 개요

- 호주의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ATT(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라는 명칭을 사용함
 - AEO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SAFE Framework의 재정으로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다수의 회원국들이 채택·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호주의 ATT는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공인 대상과 공인 기준 그리고 공인 절차 등의 내용은 WCO의 SAFE Framework를 따름

- ATT는 관세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함
 - 해당 업체와 비해당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여 관세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신속통관과 관세당국의 서비스 우대 혜택을 실행함

- 호주는 2006년 7월 AEO 프로그램의 발전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AEO Pilot 프로젝트를 시작한바 있음
 - 수출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공급망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보안 인증을 위한 신청과 평가절차를 테스트하고 미세조정하기 위함
 - Pilot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다른 세관당국으로부터의 상호인정의 협정에 도달하기 위함

- 호주의 AEO Pilot 프로젝트는 안전성과 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상호보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동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¹²⁷⁾
 - 최소 안전요구사항의 평가, 인증절차, 신청을 테스트하고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행 프로그램을 기초로 형성하게 될 업무절차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함
 - 개별 공급망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 위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절차와 사업모델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함
 - 업체가 최소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 증명방법에서 유연성이 중요함을 확인함
 - 전용 연락처(a dedicated point of contact)를 둬으로써 세관이 업체에 대한 관계성과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 무역업계의 주요 대표들과의 공급망 안전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이익, 비용,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폭넓은 관계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AEO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인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상호인정에 대한 국가 간 심도 있는 토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함

127) 호주 국경수비대,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5801>, 검색일자: 2018. 8. 21.

- 한편 우리나라와 호주는 2018년 8월 1일부터 한-호주 AEO MRA가 이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MRA 혜택이 부여됨
 - 수입화물검사 및 서류심사 비율 축소
 - 화물검사 시 우선검사
 -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시 우선조치
 -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양국 간에 지정된 세관연락관 활용

2. ATT 공인 대상 및 기준

가. 공인대상

- 호주의 ATT 공인 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WCO의 SAFE Framework를 따름
 -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Framework는 “AEO는 국제 무역공급망과 관련된 WCO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속세관 당국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국제적 이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AEO에는 제조자,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중계인, 항구 및 공항, 터미널운영인, 창고업자,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함

나. 공인기준

- 호주의 ATT 공인 기준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운영체제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품질), 국제공급망에 대한 보안, 법규준수도, 기타 관계인 관련 진입 책임 등이 있음
 -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Section 8~13을 통해 공인기준을 규정함

- Section 8 - Financial criterion
- Section 9 - Operating systems capability
- Section 10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quality
- Section 11 - 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 Section 12 - Compliance with Customs-related laws
- Section 13 - Entity'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other persons

- 재무건전성은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의 규모와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규정함¹²⁸⁾
 - 동 규정은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C와 일치하며, WTO의 무역원활화협정(ATF) 7.2(a)(iii)호와도 일치함

-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내부환경과 통제 시스템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운영체제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품질을 규정함¹²⁹⁾
 - 운영체제능력에는 수출입과 관련된 기록 관리 시스템이 포함됨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품질에는 상품의 통관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과 기업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보안 조치가 포함됨
 - 동 규정의 경우 Section 10 운영체제능력은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B와 일치하며, Section 11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품질은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F와 일치함

128)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Section 8 - Financial criterion

129)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Section 9 - Operating systems capability 및 Section 10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quality

- 국제공급망에 대한 보안은 WCO SAFE Framework의 부록 III의 몇 가지 기준과 일치하며, WTO의 무역원활화협정(ATF)의 7.2(d)호와도 일치함¹³⁰⁾
 - 제(1)항의 요건은 WCO SAFE Framework의 부록 III의 기준 M과 일치하며, 기준 M은 기업이 운영에 있어 보안 위험에 대한 정기 평가를 수행하고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3)항의 요건은 인사 보안(personnel security) 및 교육과 관련된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J 및 E에 일치함
 - 제(4)항의 요건은 출입통제 조치 등의 물리적 보안과 관련된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G, I 및 J와 일치함
 - 제(5)항의 요건은 물품의 운송에 관한 보안 조치와 관련된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G 및 H와 일치함
 - 제(6)항의 요건은 컨테이너의 보안 조치와 관련된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G 및 H와 일치함
 - 제(7)항의 요건은 물품의 보안과 관련이 있으며, 보관과정에서 물품의 안전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G와 일치함

- 법규준수도는 기업이 「관세법」 등의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표임¹³¹⁾
 - 동 규정은 기업의 결격사유, 기업의 법규위반,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관세행정 법령의 준수 등의 4가지로 WCO SAFE Framework 부록 III의 기준 A와 일치함

- 기타 관계인 관련 진입 책임은 기타 관계인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며, Section 9~1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기업의 국제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적

130)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Section 11 - 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131)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Section 12 - Compliance with Customs-related laws

절히 해결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세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함¹³²⁾

- 동 기준은 기업이 국제공급망 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는 데 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기업의 국제공급망과 무역 준수 관행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 동 기준의 목적상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비즈니스 파트너 선별 및 선정 절차 - 예를 들면 세관 중개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브로커가 세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선별을 수행할 수 있음
 - 보안 요구 사항의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럽거나 실제적인 위반 또는 세관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한 통지 절차
 -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3자와의 계약 조건 내에 보안 및 무역 준수 요구 사항을 통합
 -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 계약을 체결한 다른 기업과의 교류
 - 호주와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AEO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와의 교류
 - 본 프로그램의 목적상 국무부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와의 교류

3. ATT 공인 절차¹³³⁾

- 호주의 ATT 공인 절차는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공인기준 준수 여부 확인, 최종심의, 공인 등의 총 5단계로 진행됨
 -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Part XA Division 2의 Subdivision A는 자격기준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132)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Section 13 - Entity'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other persons

133)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about-us/what-we-do/trustedtrader/become-an-australian-trusted-trader>, 검색일자: 2019. 8. 21.

Subdivision B는 물리적 검사 및 감사를 기반으로 자격기준의 검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ATT 공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2년 이상 국제공급망에서 활동한 경우
 - 재정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호주의 사업자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가 있는 경우

- 신청 단계에서는 먼저 ImmiAccount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과정에서 언제든지 로그인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접근할 수 있음
 - ImmiAccount 등록은 해당 사이트(<https://online.immi.gov.au/lusc/login>)에 접속을 통해 가능함

- 확인 단계에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함
 - 공급망 보안 및 무역 준수 관행이 ATT 관계법령인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를 준수하는지 평가함

- 승인 단계에서는 최종심의를 통해 공인을 승인하며, 공인이 승인되면 호주 연방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ATT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ATT 공인은 기업상담전문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할 수 있음

- 호주의 ATT 공인(지명) 과정은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¹³⁴⁾
 - 문서 지명(documentary nomination)은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며, 승인된 형식과 승인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승인된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함

134) 호주 「관세법」 제176B조

- 전자 지명(electronic nomination)은 승인된 진술서(statement)에 명시된 정보를 전달해야 함
- 한편 관세청장은 규정과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계약을 변경, 일시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음

4. ATT 혜택¹³⁵⁾

- 호주의 ATT는 호주 기업에 적합한 무역 관행과 안전한 공급망을 제공하며, 공인 기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의 관세 절차를 단순화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³⁶⁾
 - 호주의 ATT 인증은 WCO 표준에 따라 해당 기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했음을 나타냄
- ATT 혜택은 크게 다음의 1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 각종 사전심사에 대한 우선처리(Priority processing)
 - 통관 절차상 화물 우선처리(Priority treatment of goods at the border)
 - ATT 전용 특혜(A seat at the table and exclusive invitations)
 - 로고의 사용(Use of logo)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 월간 화물 데이터 보고서(Data reports)
 - TSS 비자 절차(TSS visa process)
 -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135)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about-us/what-we-do/trustedtrader/benefits>, 검색일자: 2019. 8. 21.

136)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about-us/what-we-do/trustedtrader>, 검색일자: 2019. 8. 21.

- 통합화물통관(Consolidated cargo clearance)
 - 호주 정부 차원의 파트너십(Australian Government partnerships)
 - 관세유예(Duty Deferral)
 - ATT 원산지사전심사(Australian Trusted Trader (ATT) Origin Advance Ruling)
 - 원산지면제(Origin Waiver)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TT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국경수비대 (Australian Border Force: ABF) 소속 전담 공무원(Australian Border Force Officer)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공인기준 이행실태 확인, 내부통제시스템 분석 등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며,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담당함
 - 또한 혜택, 이벤트, 규정 개정 등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공급망 보안 관리의 모범 사례
 - 「관세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
 - 이민 및 비자 문의 방법
- 각종 사전심사에 대한 우선처리(Priority processing)는 ATT 수출입업체는 특정 상품의 관세, 관세평가 및 원산지와 관련된 사전심사에 대한 우선처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
-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전에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관세, 관세평가 또는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에 대한 우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환급 및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환급신청 및 면제신청의 우선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통관절차상 화물 우선처리(Priority treatment of goods at the border)는 ATT 수출입업체의 경우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소화된 통관처리가 진행됨

- 화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과 연락하여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음
- ATT 전용 특혜(A seat at the table and exclusive invitations)는 호주 이민국 경보호부 및 관세당국 등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포럼과 산업 자문 회의 그리고 연례 ATT 심포지엄 등의 참석 기회를 제공함
- 로고의 사용(Use of logo)은 Trusted Traders의 경우 ATT 로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와 공급망의 보안을 보장함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은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MRA를 체결할 경우 자국의 ATT 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 호주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임
- 월간 화물 데이터 보고서(Data reports)는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호주사업자번호(ABN)에 따라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음
 - 월간 화물 데이터 보고서는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거래 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있음
- TSS 비자 절차(TSS visa process)는 호주의 숙련된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해외의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공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TSS 지명 및 비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대부분의 신청은 5일 이내에 처리됨
-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는 별도의 비자가 없더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특정 국가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통합화물통관(Consolidated cargo clearance)은 통합화물에 대한 단일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수입비용(Import Processing Charge: IPC)만 지불할 수 있음
 - 선하증권 또는 MAWB 번호(Master Airway Bill number)와 동일하고 수입자가 Trusted Trader인 경우 단일의 수입신고가 가능함

- 호주 정부 차원의 파트너십(Australian Government partnerships)은 호주의 Trusted Trader는 Known Consignor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두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보안신고의 경우 Known Consignor 또는 RACA(Regulated Air Cargo Agent)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항공사가 화물을 수락하기 전에 유효한 보안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관세유예(Duty Deferral)는 GST를 유예하는 자격을 갖춘 Trusted Trader가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통합된 관세를 월 지불로 유예함으로써 관세채무 또는 일부를 월 단위 결제로 연기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3월에 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는 4월 21일 또는 다음 은행 영업일에 계좌에서 인출됨
 - 이러한 혜택은 GST 유예제도를 통해 GST 지불을 연기하고 WET(Wine Equalization Tax) 또는 LTC(Luxury Car Tax)의 관세가 없는 Trusted Trader에게 제공될 수 있음

- ATT 원산지사전심사(Australian Trusted Trader (ATT) Origin Advance Ruling)는 Trusted Trader에게 원산지증명서의 획득과 관련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제3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
 - 다만 동 혜택은 China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ChAFTA)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Trusted Trader에게 제공되며, 5년간 유효함

- 원산지면제(Origin Waiver)는 Trusted Trader에 대해서는 특정 FTA에 따라 원산지인증서 또는 원산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혜택을 제공함
- 원산지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FTA는 칠레,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과의 6가지 협정이 있음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I. 수입통관절차

1. 개요

- 호주의 수입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 순서로 이루어짐¹³⁷⁾
 - 호주는 대부분의 국가와 동일한 통관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수입신고 전에는 인 증·허가·검역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호주는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통관행정상의 부당 지 연 등의 문제점은 없는 편으로 세관행정에도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¹³⁸⁾
 -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과 목재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검역과정이 까다로운 편임
- 농수산물 검역은 호주 농림수산부(DAFF)가 담당함

137) 호주 국경수비대, Module 18,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Manuals/import-cargo-clearance-module-18.pdf>, 검색일자: 2019. 11. 5.

138) KOTRA, 국가지역정보, 무역, 통관절차 및 운송,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검색일자: 2019. 11. 4.

2. 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통합화물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¹³⁹⁾
 - 수입자는 고객등록양식(Clie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해 ICS에 Client로 등록해야 함
 - 서류에는 ABN, 등록자 정보(주소, 국적, 성명, 연락처, 신청목적 등)임
 - 고객등록양식 후면에는 '100 Point Check'라는 양식작성 전 구비서류 및 필요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100포인트(점수)가 되며 이를 양식 제일 하단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신고의 유형은 간이수입신고, Nature 10, Nature 20, Nature 30, Nature 10/20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간이수입신고는 1천호주달러 이하의 수입에 해당함
 - Nature 10은 가장 일반적인 수입신고 유형으로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함
 - Nature 20은 수입 시 창고(warehouse)로 보내지는 물품에 해당함
 - Nature 30은 Nature 20으로 신고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국내 소비를 위해 옮길 경우에 해당함
 - Nature10/20: 동일 탁송물(single consignment)이 국내 소비를 위한 물품과 창고(warehouse)로 인도될 물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됨


139)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ics/integrated-cargo-system-\(ics\)](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ics/integrated-cargo-system-(ics)), 검색일자: 2019. 11. 4.

[그림 3-1-1] 고객등록양식(Client Registration Form)(B31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gistering as a client in the Integrated Cargo System	
<p>NOTICE: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quired so that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can properly identify you and your electronic communications through the Integrated Cargo System.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given to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Depending on the nature and content of your electronic communic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this information may also be passed to other agencies.</p>			
Part A - Client has an ABN			
Company name (if applicable):		ABN:	
Part B - Client is an organisation without an ABN			
Name of organisation:			
Part C - Client is an individual without an ABN			
Title:	First name:	Second name:	Family name:
Part D - All clients			
Street address (must be a street address, not a PO box address):		Suburb or town (mandatory):	
State/Territory (mandatory):	Postcode (mandatory):	Country (mandatory):	
Postal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Suburb or town:	
State/Territory:	Postcode:	Country:	
Contact name:		Email:	
Telephone (business):	Telephone (after hours):	Mobile:	Fax:
Contact purpose (for example, to lodge export declarations):			
Role requested:			
<input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Exporter <input type="checkbox"/> Other role (please specify):			
Client registration lodged by:		Telephone number:	
<input type="checkbox"/> I have attached 100 points of identification with this form (see reverse).			
Signature:		Dat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use only			
CCID / ABN: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form-listing/forms/b319.pdf>, 검색일자: 2019. 11. 5.

[그림 3- 1 -2] Nature 10 수입신고 서식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Import declaration (N10)
Approved Form Section 71K of the Customs Act 1901

NOTIC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be reported under section 71K of the Customs Act 1901 in order to ensure that your goods are properly cleared for delivery into home consumption.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may be disclosed to other agencies, including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If you are required to hold a permit to import these goods, the permit details will also be given to the relevant permit issuing agency.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may result in penalty action under section 243T or 243U of the Customs Act 1901.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stored and disclosed by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the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in schedule 1 of the Privacy Act 1988.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how the Department collects, stores, uses and disclose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found in form 1442 Privacy notice available at www.homeaffairs.gov.au/forms/documents/1442.pdf. More information about how the Departmen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Department's Privacy Policy at www.homeaffairs.gov.au/about/access-accountability/plans-policies-charters/policies/privacy.

Please open this form using Adobe Acrobat Reader. Either type in the fields provided or print this form and complete it using a pen and BLOCK LETTERS. Tick where applicable

Import declaration (s71A) OR Return in relation to special clearance goods (S70(7))

Official Use Only
 Declaration ID: _____

IMPORTANT! Please complete sections A, B and C of this form

SECTION A

Owner details – Owner name		Owner ID (ABN, ABN/CAC or CCID)		Owner reference		Biosecurity inspection location	
Contact details – Owner phone				Owner fax		Owner email	
Home ()		Work ()		Mobile			
Destination port code		Invoice term type		Valuation date		Header valuation advice number	
							EFT payment indicator (Please tick one onl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Valuation elements type	Amount	Currency
a. Invoice total		
b. Overseas freight		
c. Overseas insurance		
d. Packing costs		
e. Foreign inland freight		
f. Landing charges		
g. Transport and insurance		
Free on board		
Cost insurance and freight		

PAID UNDER PROTEST INDICATOR You MUST attach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protesting the payment of duty.
 AMBER STATEMENT REASON: If you are uncertain about information included in the declaration, or omission of information from that declaration, and consider that as a result the declaration may be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you must specify the reason/s for that uncertainty. (Must be included as an attachment)

DECLARATION

I, _____ "the owner of the goods/agent of the owner hereby acknowledge that this import declaration of _____ pages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of "the owner of the goods/agent of the owner _____
(Delete which is not applicable) Date _____

8832 (Design date 03/19) – Page 1

Import declaration (N10) – Transport details

SECTION B Please complete the section relevant to the mode of transport for your goods along with the delivery address details.

AIR	Mode of transport AIR		Airline code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Gross weight	Gross weight unit
	Line number	Master Air Waybill number	House Air Waybill number	Number of packages	Marks and numbers description
	Line details				

OR

SEA	Mode of transport SEA		Vessel name	Vessel ID	Voyage number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Gross weight	Gross weight unit	
	Line number	Cargo type	Container number	Ocean bill of lading number	House bill of lading number	Number of packages	Marks and numbers description
	Line details						

OR

POST	Mode of transport POST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Parcel post card number(s)		Gross weight	Gross weight unit	Number of packages	
	Marks and numbers description					
	Line details					

OR

OTHER	Mode of transport OTHER		Department receipt for goods number	Number of packages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Gross weight	Gross weight unit	
	Line details					
	Line details					

DELIVERY ADDRESS

IMPORTANT! Please complete delivery address details

Name		Address			
Locality	State	Postcode	Country AUSTRALIA	Contact phone number	

8832 (Design date 03/19) – Page 2

Import declaration (N10) – Taffiff details

SECTION C

Line number		Supplier ID (CCID/ABN)				Vendor ID (ABN/ARN)			
Supplier name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Stat. code			
Related transaction indicator (Please tick) <input type="checkbox"/>		Valuation basis type		Treatment code		GST exemption code		Establishment code	
Goods description									
Valuation elements		Type	Amount	Currency	Origin and preference	Origin country	Preference origin country	Preference scheme type	Preference rule type
		Price							
					Treatment instruments	Instrument type		Instrument number	
					Tariff classification instruments	Instrument type		Instrument number	
Additional information								Producer code	

BISG (Design date 03/15) – Page 3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form-listing/forms/b650.pdf>, 검색일자: 2019. 11. 6.

- 통관 시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원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입품목에 따라 검역서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함
 - 호주는 수출목재포장재에 검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목재포장재의 경우 수입신고 필요서류로 검역서 등이 추가됨

- 수입물품은 정확한 물품표기가 요구되며, 음식물의 경우 유럽표시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함¹⁴⁰⁾
 - 물품표기는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말하며, 영어로 표기되어야 함

¹⁴⁰⁾ KOTRA, 국가지역정보, 무역, 통관절차 및 운송,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검색일자: 2019. 11. 4.

나. 물품 검사

- 물품신고가 ICS를 통해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따라 녹색, 적색, 황색으로 분류하여 물품 검사 및 반출이 이루어짐
- 녹색신고(Green line)는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임
 - 녹색신고의 경우 수입자 혹은 대리인이 관세 및 기타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서를 받을 수 있음
- 적색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 적색신고(Red line) 품목은 품목 분류의 오류나 검역 대상 물품이 적절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가격이 송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해당됨
- 황색신고(Amber line)는 위장 수입품이나 관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 혹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임
 - 물품의 검사사항은 수량, 가격, 원산지, 덤핑/보조금, 특혜관세 적합 여부 등임¹⁴¹⁾
 - 검역은 팔레트의 훈증처리 여부, 목재 패키지의 방역 여부 등임

다. 관세 납부

- 수입신고 후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물품반출이 가능함
 - 수입신고 후 화물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과정을 거친 뒤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함

141)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71L Import Declaration(N10),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files/71l-import-declaration-n10.pdf>

- 관세 및 관련 제세는 통관수속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제세금과 수리 후 일주일 내에 지불할 수 있는 이용료로 분류됨¹⁴²⁾
 - 통관수속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제세
 - Goods& Service Tax(GST)
 - Overseas/Air Freight
 - B.S.R.A. & D/O/ITF & IDF
 - Customs Computer Terminal 사용료
 - Owner Code Application Fee
 - Supplier Code Application Fee
 - 이용료(Service Charge)는 수리 후 일주일 내 지불할 수 있음
 - Customs Agent's Fee/Professional Attendance Fee
 - Cartage to Warehouse Fee(필요한 경우)
 - Unpacking Fee(필요한 경우)

- 세관 수출입 신고 시 ABN이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국세청에 기록됨¹⁴³⁾
 - 수입신고 시 기재하는 ABN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발행되는 신고자 번호임
 -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진행됨

142)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cost-of-importing-goods/gst-and-other-taxes>

143)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라. 물품 반출

-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이후 물품 반출까지는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소요됨
 -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담배(Tobacco) 수입¹⁴⁴⁾

- 호주에서 쉐련(cigarettes), 몰라세(molasses tobacco), 잎담배(loose leaf tobacco)를 포함한 대부분의 담배 관련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수입 또는 반입이 금지됨
 - 호주 당국은 2019년 7월 1일부터 담배 수입 또는 반입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적용함
 - 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용으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 면세 범위 및 과세범위에 대한 내용임¹⁴⁵⁾
- 2019년 7월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개인의 담배 면세한도는 25개피 또는 25g이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함¹⁴⁶⁾
 - 단 개봉된 한 갑의 담배까지는 추가로 허용됨
- 호주는 담배 관련 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 0.8g 이상에 해당하는 담배의 관세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인상됨

144) *The Customs (Prohibited Imports) Amendment (Collecting Tobacco Duties) Regulations 2019*,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categories/tobacco>, 검색일자: 2019. 11. 5.

145)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categories/duty-free>, 검색일자: 2019. 11. 6.

146) Customs Tariff Act 1995, 19AB, Indexation of tobacco duty rates,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025/Html/Volume_1#_Toc500936988, 검색일자: 2019. 11. 6.

- 우리나라 담배의 경우 0.8g 이상 담배에 해당함

〈표 3-1-1〉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 인상 현황(2014.9.~2019.9)

연도	0.8g 이하 담배	0.8g 이상 담배
2014. 9.	0.46268	578.37
2015. 9.	0.53096	663.70
2016. 9.	0.61054	763.20
2017. 9.	0.69858	901.39
2018. 9.	0.80726	1076.35
2019. 9.	0.93653	1291.77

자료: Tobacco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2-tobacco-taxes-in-australia>, 검색일자: 2019. 11. 6.

- 상업용도로 담배를 수입하거나 면세분을 초과해 개인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국경수비대가 발행하는 허가증이 필요함
 - 허가증은 호주 내무부(Home Affairs)에서 신청·발급하며, 국경에 반입되기 전에 관련 제세를 납부해야 함
 - 단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수입금지가 면제됨
 - 입안에서 녹여먹는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 products)¹⁴⁷⁾
 - 시가(cigars)
 - 면세한도 내에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제품
 - 비궐련형 담배(unmanufactured tobacco)¹⁴⁸⁾

147) 동법 regulation 4U에 해당

148) 동법 regulation 4D에 해당

II. 수출통관절차

1. 개요

- 호주의 수출 통관 절차는 국경수비대(ABF)에서 관리하며, 수출자는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함
 - 수출 요건 및 제한 사항에 관한 세부 정보는 국경수비대(ABF) 웹사이트(<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contact-us>)를 통해 문의할 수 있음

- 호주 「관세법」에 따르면 호주를 출발하는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는 출발일 3일 이내에 국경수비대(ABF)에 주요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⁴⁹⁾
 - 수출통관증명서(Certificate of clearance)를 받기 위해서는 국경수비대(ABF)에 출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수출 관련 서류는 수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수출업체에 호주사업자번호(ABN)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수출신고의 수정 또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해야 함

149) 호주 국경수비대, *Exporter Obligations and Reporting Requirements*, 2011. 7.

- 수출신고가 취소되는 경우 수출자는 7일 이내에 수출신고번호를 철회해야 함
- 보세창고 내에서의 수출물품의 이동은 각 단계마다 국경수비대(ABF)로 보고되어야 함
- 수출을 위해 부두 또는 공항에서 수령한 모든 항공 및 컨테이너 해상화물, 대부분의 브레이크 벌크 및 일부 벌크화물은 수령인이 세관 및 국경수비대(ABF)에 신고해야 함
- 여러 위탁물을 통합할 때에는 통합 하위목록을 세관 및 국경수비대(ABF)에 제출해야 함

2. 수출통관절차

가. 수출신고

1) 수출신고¹⁵⁰⁾

- 호주는 2천호주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ICS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식이나 서면신고를 통해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출신고는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통한 전자적 방법 또는 수출신고서 양식(B957 Form)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화주 또는 대리인은 수출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세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서명함

150)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exporting/how-to-export/export-declaration>, 검색일자: 2019. 11. 11.

- ② 화주 또는 대리인은 수출신고서와 함께 신원증명서(Evidence of Identity, EOI)와 필요한 경우 고객등록양식(client registration form)을 제출함
 - ③ 세관 담당자에 의한 신원증명서(EOI) 확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출신고가 처리됨
 - ④ 만약 수출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인에게 수정통지를 하며, 화주 또는 대리인은 수정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⑤ 해당 수출신고서의 처리가 완료되면 국경수비대(ABF)는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 중 하나의 수출통지서를 제공할 것임
 - 수출물품을 취급할 권한
 - 지정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을 취급할 권한
 - 관계법령(Excise Act 1901)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는 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을 처리할 권한
 - 거래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물품을 수출할 수 없음을 의미함)
- 한편 수출신고인은 수출신고 관련 자료를 수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관에 제출한 수출통관정보는 호주 통계청과 수출허가 발급기관과 공유함

2) 수출신고서¹⁵¹⁾

- 수출신고서의 항목은 크게 기본정보(Header Details)와 화물정보(Line Details) 그리고 서명(Decla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정보는 운송수단, 화물유형, 총FOB가격, 총수량 및 총포장, 컨테이너 수량, 적재항 등이 해당됨
 - 화물정보는 원산지정보, 물품설명, FOB가격, 순중량, 총중량 등이 해당됨

151)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p. 66~7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수출신고서는 지정된 양식(B957 Form)을 사용해야 하며, 각 세부항목은 [부록]을 참고

가)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수출신고서에는 출항예정일과 보세구역 장치물품인지 여부와 소비세 부과대상(담배 또는 주류 등) 물품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함
- 수출신고의 잠정신고 후 사후보완(confirming exporter) 여부와 화물의 유형 항목은 필수 항목임
 - 경매에 부쳐진 화물 또는 벌크화물 등은 수출신고를 하는 때에 화물의 가격, 중량,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고 선적된 후 확정됨
 - 따라서 정기적으로 신고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 사후보완 자격을 승인받아 잠정신고 후 물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세관에서 통지한 기한 내에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수출물품의 적재부터 목적국 도착까지의 운송방법과 운송용기 등의 운송정보를 항목별로 신고해야 함
 - 적재항, 최초로 양륙하는 항구, 최종 목적국, 항공 또는 해상운송수단, 선박 ID, 화물의 종류, 총포장 수량, 총컨테이너 수량 등

나) 화물정보

- 품목번호, 물품설명, 원산지정보, 수출요건 확인 등의 화물정보는 필수 기재항목이며, 지정된 양식(B957 Form)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호주는 HS코드 8단위의 수출품목번호(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AHECC)를 운영하고 있음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경수비대(ABF)에 수출품목 번호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 수출물품의 순중량, 순중량 단위, FOB가격, 컨테이너 중량을 제외한 적재 시 화물의 총중량과 총중량 단위를 신고해야 함
- 수출신고물품 결제금액에 대해서도 총FOB가격과 FOB가격 환산단위, 통화단위를 신고해야 함

다) 수출요건확인

- 수출신고서에 수출요건 확인기관의 수출허가 또는 승인번호를 입력함으로써 ICS 시스템과 연계된 수출요건 확인기관의 수출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ICS시스템에는 수출품목번호(AHECC)와 수출허가 필요 여부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수출허가 대상과 수출허가 여부 확인대상 그리고 일반통관품목으로 분류됨
 - 수출품목번호(AHECC)별로 수출허가번호, 요건확인 관련 법령부호 등
 - 신고인이 수출문서화시스템(Export Documentation System)에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ICS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수출요건 확인을 처리함
 - 호주 검역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 승인 및 검역을 관리하는 수출문서화시스템을 운영함
- 한편 호주 통계청에서는 금속광물에 대한 화학 검사(Assay) 결과 특정 화학성분 또는 이온으로 구성된 광석의 성분 비율 등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금속성분과 농도 및 단위 등을 신고하여야 함

3) 수출신고가 면제되는 물품

-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면제되고 있음
 - 개인휴대품
 - 2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 애완동물
 - 「관세법」 제162조에 따른 까르네 수출신고물품
 - 우편물
 - 외교관용 물품
 - 운송용구
 - 호주 국방부에서 수출하는 군수물품
 - 호주 국내화물
 - 화물 및 선박 매장의 국제운송컨테이너

- 수출 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는 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수출관리매뉴얼(<https://www.abf.gov.au/exporting-subsite/files/fact-sheets/export-control-manual.pdf>)”을 통해 확인 가능함

나. 물품반출

- 수출신고 이후 수출항에 도착한 물품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인의 화물 수령 통지 후에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함

- 출항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관에서는 수출통관증명서(Certificate of clearance)를 발급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발 3일전까지는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 출항신고를 해야 함

- 수출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의 수출이 예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신고는 자동으로 취하됨

다. 기타¹⁵²⁾

1) 수출데이터

- 수출통관절차에서 수출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보고 등의 정보는 통관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수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됨
 - 이러한 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중대한 처벌이 있음
 - 「관세법」 234조 제1항 (d)호에 따라 수출심사의 경우에도 특정 물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경우 벌금은 최고 5,000호주달러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보고되는 무역통계는 국제환경에서의 호주의 무역상태(trade status)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출신고서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해야 함
 - 무역통계는 국제무역 분야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산업 그리고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 가운데 일부임

2) 기밀유지

-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수출거래의 상업적 기밀과 수출신고서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수출업자가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경수비대와 통계청은 기밀침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행정법(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에서는 특

152) 호주 국경수비대, *Exporter Obligations and Reporting Requirements*, 2011. 7.

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지함

- 기밀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출업체를 식별할 수 있음을 해당 수출업체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호주 통계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참고문헌

- 산업자원부,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무역투자연구원, 2007. 7.
- 국가기술표준원, 『호주,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7. 9.
- 국세청,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12.
-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 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 무역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세계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4. 9. 1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5. 4.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FTA/WTO 세이프가드제도 비교 및 동등주의 법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종보고서, 2015. 10.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2016. 12.
- 외교통상부, 『한-호주 FTA상세설명자료』 2014. 4.
- 이상엽, 이민선, 김미영,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이지원, 『호주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2015. 7.
-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최동근·김미진, 『UNCTAD의 비관세장벽DB에 나타난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2018. 2. 28.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호주 국경수비대, *Exporter Obligations and Reporting Requirements*, 2011. 7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2>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oceania/oceania_2.jsp

코트라 호주공관 뉴스,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380>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한-호주 FTA 포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

호주 국경보호부, www.border.gov.au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luxury-car-tax-rate-and-thresholds/#LCTthreshold>

호주 검역검사국, <https://bicon.agriculture.gov.au/>

호주 검역청,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importing-korean-food>

호주 내무부,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us-subsite/files/abf-org-structure.pdf>

호주 농림부, <http://www.agriculture.gov.au/market-access-trade/fta>

호주 반덤핑위원회, <https://www.industry.gov.au>

호주 법령검색,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01>

호주 외교통상부, <https://dfat.gov.au/TRADE/RESOURCES/TRADE-AT-A-GLANCE/Pages/default.aspx>

호주중앙은행(RBA), <https://www.rba.gov.au/statistics/frequency/exchange-rates.html>

호주 환경에너지부, <http://energyrating.gov.au/consultation/refrigerated-cabinets-determination-exposure-draft>

호주 환율정보사이트, <https://kr.investing.com/currencies/aud-usd>

호주 BEP,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Certain-Inputs-to-Manufacture>

호주 EESS, <https://www.eess.gov.au/rcm/regulatory-compliance-mark-rcm-general/>

UNCTAD, <http://trains.unctad.org>

ABC NEWS, <https://www.abc.net.au/news/environment/>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orld_tariff_profiles19_e.htm

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 (Customs Tariff Act 1995)

호주 「통상법」

호주 관세규정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03/48

COMMERCE (IMPORTS) REGULATIONS 1940

Customs (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me) Rule 2015

Import Processing Charges Act 2001

Tradex Scheme Act

The Customs (Prohibited Imports) Amendment (Collecting Tobacco Duties) Regulations 2019

부록 I. 관세율법 Schedule 4에 따른 관세감면 품목

구분	물품명	관세율
1	<p>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p> <p>(a)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to which Annex D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greement, or Annex D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Protocol, applies; or</p> <p>(b) of a scientific nature and covered by an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another country or other countries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p>	Free
2	<p>Specimens of materials or substances, where:</p> <p>(a) the property values of one or more of those specimens are sufficiently homogeneous and/or well established to be used for the calibration of an apparatus, the assessment of a measurement method or the assignment of a value to a material; or</p> <p>(b) the specimens are to be used for the comparison and assessment of laboratory practices; or</p> <p>(c) the specimens are to be examined as part of a program of developing a reference material</p>	Free
3	<p>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p> <p>(a) books, publications or documents to which Annex A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greement, or Annex A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Protocol, applies; or</p> <p>(b) visual or auditory materials to which Annex C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greement, or Annex C.2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Protocol, applies</p>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4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calendars, catalogues, overseas travel literature, overseas price lists or other overseas printed matter	Free
5	Goods that are: (a)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that is the property of any public institution and is intended for deposit with, or exhibition in, that institution; or (b) pictorial illustrations for teaching purposes in universities, colleges, schools or public institutions	Free
6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classified under heading 3705 of Schedule 3 (about certain photographic plates and film)	Free
7	Works of art or collectors' pieces: (a) to which Annex B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greement, or Annex B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Protocol, applies; and (b) that are consigned to a library, museum, gallery or institution that is covered by item 12.1.2, 12.1.3, 12.1.4 or 12.1.5 of the table in subsection 30-100(1)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and is endorsed under Subdivision 30-BA of that Act as a deductible gift recipient	Free
8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theatrical costumes or props; or (b) traditional costumes	Free
9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for the official use of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another country or other countries; or (b) for the official or personal use of an official of such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Free
10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 at the time they are entered for home consumption, are owned by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and are for the official use of that government; and (b) are not to be used for the purposes of trade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11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for use by, or for sale to, persons the subject of a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another country or other countries	Free
12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t the time they are entered for home consumption, are for the official use of a Trade Commissioner of any country	Free
13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in relation to which the customs procedures of the Commonwealth are to be applied in the manner mentioned in Article 16 of the Treaty between Australia and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concerning Sovereignty and Maritime Boundaries in the area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the area known as Torres Strait, and Related Matters, done at Sydney on 18 December 1978	Free
14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for use in a petroleum activity in the Eastern Greater Sunrise offshore area (within the meaning of the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6)	Free
15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goods imported by passengers or members of the crew of ships or aircraft; or (b) goods that: (i) at the time they are approved for delivery for home consumption, are the property of a person who has arrived in Australia on an international fligh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6B of the Customs Act 1901; and (ii) were purchased by that person in an inwards duty free shop within the meaning of that section; or (c) goods brought into, or sent to, Australia by such members of the Defence Force stationed outside Australia as are prescribed by by-law; or (d) goods imported by members of the forces of Canada, New Zealand or the United Kingdom; or (e) passengers' personal effects, furniture or household goods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16	<p>Goods that are covered by an article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one or more other countries, being an article that is prescribed by by-law and that relates to the export of goods from Australia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p> <p>(a) repair;</p> <p>(b) renovation;</p> <p>(c) alteration;</p> <p>(d) other similar processes</p>	Free
17	<p>Goods, as prescribed by by-law:</p> <p>(a) that have been exported from Australia and returned to Australia without having been subject to any treatment, repair, renovation, alteration or any other process since their export; and</p> <p>(b) that are not goods to which item 17A of this Schedule applies</p>	Free
17A	<p>Goods produced in Australia that:</p> <p>(a) have been exported from Australia and returned to Australia without having been subject to any treatment, repair, renovation, alteration or any other process since their export; and</p> <p>(b) conta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p> <p>(i) components (the tradex components) previously imported by the holder of a tradex order under the Tradex Scheme Act 1999 in which the components were specified, except components on which tradex duty has been paid under section 21 of that Act;</p> <p>(ii) components (the drawback components) in respect of which there has been a drawback or refund of any duties of the Commonwealth;</p> <p>(iii) components (the excise components) that, at a time before they were exported, were excisable goods (within the meaning of the Excise Act 1901) in respect of which excise duty (payable under the Excise Tariff Act 1921) was not paid</p>	<p>The sum of:</p> <p>(a) the amount of duty that would apply to each tradex component and drawback component if each component were imported separately; and</p> <p>(b) the amount of duty that would apply to each excise component if each component were imported separately (disregarding duty to the extent that it is worked out by reference to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goods)</p> <p>NZ/PG/FI/DC/DCS/DCT/LDC/SG/US/TH/CL/AANZ: the sum of:</p> <p>(a) the amount of duty that would apply to each tradex component and drawback component if each component were imported separately; and</p>

구분	물품명	관세율
		(b) the amount of duty that would apply to each excise component if each component were imported separately (disregarding duty to the extent that it is worked out by reference to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goods)
18	<p>Goods:</p> <p>(a) that were previously imported into Australia, that have been returned after repair overseas free of charge under warranty and that are neither upgraded goods nor goods in respect of which there has been a drawback or refund of any duties, taxes or charges of the Commonwealth; or</p> <p>(b) that are supplied free of charge under warranty, or as part of a global product safety recall, to replace goods (the replaced goods) previously imported into Australia, and that are neither upgraded goods nor goods to replace goods which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operational life, where:</p> <p>(i) the replaced goods are of no commercial value, the replaced goods have been or will be destroyed or the replaced goods have been or will be exported and will not be re-imported under any item of this Schedule; and</p> <p>(ii) the replaced goods are not goods in respect of which there has been a drawback or refund of any duties, taxes or charges of the Commonwealth</p>	Free
19	<p>Goods:</p> <p>(a) that a tariff concession order under section 269Q of the Customs Act 1901 declares are goods to which this item applies; and</p> <p>(b) whose identity has not been altered since the day they were exported from Australia</p>	Free
20	<p>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satisfy the following:</p> <p>(a) they have been exported from Australia for repair or renovation and returned after being repaired or renovated;</p>	The applicable percentage of the cost, as determin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Customs, of materials, labour

구분	물품명	관세율
	(b) they are not new or upgraded versions of the exported goods; (c) they are not goods to which item 16, 18 or 19 of this Schedule applies; (d) under Schedule 3, 5, 6, 7 or 8, duty on the goods is worked out by reference to a percentage (the applicable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goods	and other charges involved in the repair or renovation NZ/PG/FI/DC/DCS/LDC/SG/US/TH/CL/AANZ: the applicable percentage of the cost, as determin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Customs, of materials, labour and other charges involved in the repair or renovation
21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imported for repair, alteration or industrial processing; and (b) to be exported from Australia	Free
21A	Goods that are specified in a tradex order in force under the Tradex Scheme Act 1999 and are imported by the holder of that order	Free
22	The following goods: (a)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imported on or in containers, as prescribed by by-law, where the containers will be exported without being put to any other use; (b) those containers	In respect of the goods on or in the containers: the rate of duty that would apply to the goods if they were imported separately In respect of the containers: Free NZ/PG/FI/DC/DCS/LDC/SG/US/TH/CL/AANZ: in respect of the goods on or in the containers: the rate of duty that would apply to the goods if they were imported separately NZ/PG/FI/DC/DCS/LDC/SG/US/TH/CL/AANZ: in respect of the containers: Free
23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have been: (a) donated or bequeathed by a person, company or organisation resident or established outside Australia to an organisation established in Australia for the purposes of performing work of a philanthropic nature; or (b) donated or bequeathed to the public or to a public institution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24	Goods that: (a) are not to be sold or to be used for the purposes of trade; and (b) the Collector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8(1) of the Customs Act 1901) is satisfied became the property of the importer under the will or the intestacy of a deceased person at a time when the importer was resident or established in Australia	Free
25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trophies won outside Australia; or (b) decorations, medallions or certificates awarded outside Australia; or (c) trophies or prizes sent by donors resident outside Australia for presentation or competition in Australia	Free
26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whose value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by-law	Free
27	Samples, as prescribed by by-law, whose value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by-law	Free
28	Aids and appliances, as prescribed by by-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ee
29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a) good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 goods to which Annex E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greement, or Annex E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Protocol, applies	Free
30	Components or materi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r repair of wheelchairs	Free
31	Goods that are Qualifying Goods, as defin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ARTECA (TCF Provisions) Scheme, entered for home consumption on or before 31 December 2014	Free
32	Textiles, clothing and footwear, as prescribed by by-law	Free
33	Goods which, apart from paragraph (b) of Note 1 to Chapter 90 of Schedule 3 (about supporting belts or other support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would be classified under that Chapter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34	Aircraft parts, materials or test equipment for use in the manufacture, repair, maintenance or modification of aircraft, except the following: (a) textiles and goods made from textiles; (b) goods for use in the servicing of aircraft	Free
35	Parts of vessels, or material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modification or repair of vessels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nes as defined by by-law	Free
36	Vehicles aged 30 years or more that are: (a) utilities or pick-ups, having a g.v.w. (within the meaning of Additional Note 7 to Chapter 87 of Schedule 3) not exceeding 3.5 tonne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8704.21.10 or 8704.31.10 of Schedule 3; or (b) passenger motor vehicles	Free
37	Used or second-hand passenger motor vehicles, as prescribed by by-law	5% US:5% TH:5% CA:Free
38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where: (a) the goods are vehicle components for use as original equipment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vehicles; and (b) the vehicles are of a kind which, if imported, would be classified under heading 8702, 8704 or 8705, or subheading 8701.20.00, 8701.90.20, 8703.22.20, 8703.23.20, 8703.24.20, 8703.31.20, 8703.32.20, 8703.33.20 or 8703.90.20, of Schedule 3	Free
39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for use in the testing, quality control, manufacturing evaluation or engineering development of: (a) motor vehicles manufactured by motor vehicle producers registered under the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 (within the meaning of the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 Act 2009) or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for inclusion in such motor vehicles; or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b) motor vehicles designed or engineered, or in the process of being designed or engineered, in Australia by motor vehicle producers registered under the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 (within the meaning of the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 Act 2009) or components for inclusion in such motor vehicles	
40	Aluminised steel classified under subheading 7210.61.00, 7210.69.00 or 7212.50.00 of Schedule 3 an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utomotive muffler exhaust systems or components	Free
41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for use in a space project authorised by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Space Activities Act 1998	Free
42	Robots, as prescribed by by-law, or parts or accessories that are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uch robots	Free
43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for use as prototypes	Free
44	Goods, including machinery, equipment, or their component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for use in any of the following industries: (a) mining; (b) resource processing; (c) agriculture; (d) food processing; (e) food packaging; (f) manufacturing (within the meaning of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ZSIC)); (g) gas supply; (h) power supply; (i) water supply	Free
45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where: (a) the goods are original components of a completed machine or equipment to which a single tariff classification would apply under a heading or subheading in Chapter 84, 85, 86, 87, 89 or 90 of Schedule 3 if the completed machine or equipment were imported; and	The rate of duty that would apply to the goods if they were the completed machine or equipment of which they are components NZ/PG/FI/DC/DCS/LDC/ SG/US/TH/CL/AANZ: the rate

구분	물품명	관세율
	(b) all the components: (i) are ordered from a single overseas supplier; and (ii) are shipped to Australia by the same supplier; and (iii) were available for shipment to Australia at the one time; and (iv) arrive in Australia on 2 or more vessels or aircraft; and (c) item 44 of this Schedule does not apply to the goods	of duty that would apply to the goods if they were the completed machine or equipment of which they are components
46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 are classified under heading 5903, or within Chapter 28, 29, 32, 34, 35, 37, 38, 39 or 48, of Schedule 3; and (b)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have a substantial and demonstrable performance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a specific end product, over substitutable goods produced in Australia	Free
47	Metal materials and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 are classified within Chapters 72 to 82 of Schedule 3; and (b)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have a substantial and demonstrable performance advantage, in the packaging of food, over materials and goods currently available in Australia	Free
48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classified under heading 3814.00.00, 3908, 4801, 4802, 4810 or 4811, or subheading 2836.20.00, 2903.71.00, 2903.72.00, 2903.73.00, 2903.74.00, 2903.75.00, 2903.79.10, 2905.16.00, 2905.19.10, 2912.60.00, 2915.70.00, 2915.90.00, 3503.00.10, 3701.30.00, 3701.91.00, 3701.99.00, 3702.32.90, 3702.39.90, 3702.44.90, 3702.96.90, 3907.60.00, 3907.70.00 or 3907.9, of Schedule 3	Free
49	Aluminium sheet, as prescribed by by-law, that i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7606.12.00 or 7606.92.00 of Schedule 3 and is used in the manufacture of aluminium cans	Free

구분	물품명	관세율
50	Goods that a tariff concession order, under Part XVA of the Customs Act 1901, declares are goods to which this item applies: (a) goods except goo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3817.00.10, or heading 3819.00.00, of Schedule 3; or (b) goo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3817.00.10 of Schedule 3; or (c) goods classified under heading 3819.00.00 of Schedule 3: (i) as prescribed by by-law; or (ii) other	Free \$0.38143/L NZ/PG/FI/DC/LDC/SG/US/ TH/CL/AANZ:\$0.38143/L Free \$0.05449/L NZ/PG/FI/DC/LDC/SG/US/ TH/CL/AANZ:\$0.05449/L
51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where: (a) the goods are machinery; and (b) the machinery incorporates, or is imported with, other goods which makes the machinery not eligible for a tariff concession order under Part XVA of the Customs Act 1901	Free
52	Goods,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classified under heading 2710, 3403 or 3811 of Schedule 3	Free
53	Goods: (a)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classified under heading 3819.00.00 of Schedule 3; and (b) that are not goods to which item 50 of this Schedule applies	5% US:5% TH:5% CL:5% AANZ:5%
54	Handicrafts, as prescribed by by-law	Free
55	Cheese and curd, as prescribed by by-law, that are classified under subheading 0406.10.00, 0406.20.00, 0406.30.00, 0406.40.90 or 0406.90.90 of Schedule 3	\$0.096/kg DC:\$0.096/kg, less 5% DCS:\$0.096/kg, less 5%

자료: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 검색일자: 2019. 9. 2.

부록 II. 수출신고서 양식((B957 Form))

 Australian BORDER FORCE		Export declaration or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62A(6A)				
		Approved Form paragraphs 114(3)(c) and 162AA(3)(a) of the Customs Act 1901. Notice: We require this information under the Customs Act 1901, so we can ensure that your goods are properly cleared for export.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given to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Australia Taxation Office. If you are required to hold a permit to export these goods, the permit details will also be given to the relevant permit issuing agency. Complete this form using a pen and BLOCK LETTERS. Tick where applic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EDN – System generated number		1. Reference – OFFICIAL USE ONLY			2. Reporting party type Owner <input type="checkbox"/> Agent <input type="checkbox"/>	
3. Your reference		4. Reporting party ID			5. Intended date of export / /	
6.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7. Customable / Excisable indicator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8. Prescribed goods indicator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0. Goods owner party ID (ABN/CCID)		11. Branch ID – Confirming export only			9. Warehouse Est. ID / /	
13. Export goods type ST <input type="checkbox"/> PO <input type="checkbox"/> SP <input type="checkbox"/> AB <input type="checkbox"/> OP <input type="checkbox"/> OT <input type="checkbox"/>		14. Consignee name				
15. Consignee city		16. Port of loading		17. First port of discharge		
19. Mode of transport Air <input type="checkbox"/> Sea <input type="checkbox"/>		20. Vessel ID / Flight number		21. Voyage number		
23. Total number packages		24. Total number containers		25. Invoice currency		
				26. FOB currency		
				27. Total FOB value		
Line details						
Complete a separate form B957a 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 for each additional export commodity (each line)			28x. Line number		28.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AHECC)	
29. Goods description						
30. Goods origin code		31. Goods origin country code(s)			32. Temporary import number	
33. Net quantity – a) Amount		b) Unit		34. Gross weight – a) Amount		
				b) Unit		
35. Line FOB value		36. Permit prefix		Permit number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make this export declaration (comprising a B957 Export declaration (header page) and B957a 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s) (insert number of additional supplementary page(s) not including notes pages)) and hereby declare I am the:						
<input type="checkbox"/> owner/authorised principal exporter, or an employee of the owner/authorise principal exporter <input type="checkbox"/> authorised agent for the owner or exporter 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complete and correct.						
Name of the person making the entry				Company name		
Position in company				Contact address		
Contact phone number		Contact fax number		Contact email address		
Signature						Date / /

B957 (Design date 02/19) – Page 1

Notes for completing an *Export declaration*

1. **Department file reference**
OFFICIAL USE ONLY. Leave blank.
2. **Reporting party type (mandatory)**
Tick either the 'Owner' or 'Agent' box to identify the reporting party type.
3. **Your reference (mandatory)**
This reference must be unique and be used for both your files and to differentiate between consignments.
4. **Reporting party ID (mandatory)**
The identifier of the party lodging the declaration.
The identifier must be either an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or Customs Client Identifier (CCID).
Expressed as DD/MM/YYYY.
5. **Intended date of export (mandatory)**
Expressed as DD/MM/YYYY.
6.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optional)**
For use as an alternative release process, where a Contingency Customs Authority Number (C-CAN) is quoted to the Australian Border Force (ABF).
7. **Customable / Excisable indicator (mandatory)**
Show whether or not the goods would be subject to Commonwealth Excise duty if they were to be delivered into home consumption rather than being exported.
Tick the appropriate box.
8. **Prescribed goods indicator (mandatory)**
The code indicating whether or not goods covered by the declaration are prescribed goods under section 102A of the Customs Act 1901.
Tick the appropriate box.
9. **Warehouse establishment ID (mandatory if 'Customable / Excisable indicator' is 'Yes')**
Establishment code of the warehouse or excise place from which the goods are to be removed.
10. **Goods owner party ID (mandatory)**
The owner party ID of the common law owner of the goods. This must be either an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or a Customs Client Identifier (CCID). If 'Reporting party type' is 'Agent', the ABN or CCID for this item cannot be the same as 'Reporting party ID'.
11. **Branch ID**
An identifier that is linked to the 'Goods owner party ID', used to further identify the party within that organisation.
12. **Confirming exporter type (mandatory)**
A code indicating whether the exporter has confirming export status and proposes to rely on that status in relation to goods in the declaration.
Confirming: Y
Non Confirming: N
Confirmed: C
13. **Export goods type (mandatory)**
Tick the appropriate box.
Stores: ST
Postal: PO
Spares: SP
Accompanied Baggage: AB
Own Power: OP
Other: OT
14. **Consignee name (mandatory)**
The name of the person/organisation taking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This should be the principal, not a bank, freight forwarder, etc.
15. **Consignee city (mandatory)**
The city/town in which the person/organisation who takes final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is located.
16. **Port of loading (mandatory)**
The port in Australia where the goods are loaded on board a vessel to begin their international voyage.
17. **First port of discharge (mandatory)**
The name of the first port of discharge overseas.
18. **Final destination country code (mandatory)**
The name of the country that is to be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goods.
19. **Mode of transport (mandatory unless 'Export goods type' is 'PO', then leave blank)**
Tick the appropriate box.
20. **Vessel ID / Flight number (mandatory if 'Export goods' is 'ST', 'SP' or 'AB')**
The Lloyd's identity number, registration number of the aircraft, or identifier.
21. **Voyage number (mandatory if 'Vessel ID / Flight number' requires a 'Vessel ID')**
A unique voyage number of the vessel carrying the goods.
22. **Cargo type**
Tick the appropriate box.
Containerised: C
Co-Combination: CO
Non-Containerised: N
Bulk: B
23. **Total number packages (mandatory if 'Mode of transport' is 'Air' or if 'Mode of transport' is 'Sea' and 'Cargo type' is 'N' or 'CO')**
24. **Total number containers (mandatory if 'Mode of transport' is 'S' and 'Cargo type' is 'C' or 'CO')**
'Containers' refers to the sea cargo containers.
25. **Invoice currency (mandatory)**
26. **FOB currency (mandatory)**
i.e. Australian dollars, etc.
27. **Total FOB value (mandatory)**
The total free on board (FOB) value of the goods, including all costs incidental to the sale and delivery of the goods on to the exporting vessel/aircraft. No discount given is to be deducted from the true value of the goods. The FOB value should be expressed to the nearest dollar. It should be noted that FOB does not include overseas freight and insurance. The FOB values of samples must be shown as the market value of the goods as if they were for sale.
- 28a. **Line number (mandatory)**
A supplementary page must be completed for each separate commodity as identified by the AHECC code (see Commodity Classification). If the goods to be exported are minerals requiring an assay, use the B957a *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
28. **Commodity Classification (mandatory)**
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AHECC) code is a statistical classification for the particular commodity being exported. This code may be obtained from the Department or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9. **Goods description (mandatory)**
A description of the goods.
30. **Goods origin code (mandatory)**
The code used to identify the Australian (or foreign) state of origin of goods, as listed below:
NSW: AU-NS
TAS: AU-TS
VIC: AU-VI
NT: AU-NT
QLD: AU-QL
ACT: AU-CT
SA: AU-SA
WA: AU-WA
FOREIGN: YY-FO
31. **Goods origin country code (mandatory if 'Goods origin code' is 'Foreign')**
The name of the primary country where the goods were manufactured or produced.
32. **Temporary import number (mandatory if the AHECC is for the export of goods originally imported on a temporary basis)**
A number identifying the export of goods which are temporarily imported under section 162 or 162A of the Customs Act 1901.
33. **Net quantity (mandatory)**
The net quantity of goods is described in terms of the units prescribed in the AHECC (e.g. KG, T, NO). If the unit prescribed by the AHECC is 'NR', the quantity details are not required, but 'NR' must be shown in the units box. Net quantity should not include the weight of any additional packaging.
34. **Gross weight (mandatory)**
The gross weight is, in effect, the shipping weight of the goods. It should include the weight of any immediate packaging but not the weight of the container. Show weight in grams (G), kilograms (KG) or tonnes (T).
35. **Line FOB value**
The FOB value of the goods quoted on this export declaration line, (see Item 25). The FOB value should be expressed to the nearest dollar. (Also see 'Line FOB value' of the B957a *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
36. **Permit details (Prefix / Permit number)**
A wide range of goods are prohibited from exportation unless an export permit is obtained from the appropriate agency. Details of export restrictions are contained in various Commonwealth laws. Further advice can be obtained from your legal adviser, agent, etc. or the Department. Input the permit number given by the relevant permit issuing authority. Each permit issuing authority has its own permit prefix. The correct prefix must be included for all permits.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호주 편 -

발 행 2019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박지우 · 김미정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985-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